ISSN : 2092-8025

KISO저널

2009 Fall Vol. 1
www.kiso.or.kr

✚ 창간사 / 발간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 정책결정 리뷰
✚ 〈특집〉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제1차 KISO정책세미나]
✚ 해외동향
✚ KISO 기구 정보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제 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통권 1호
발행일 2009년 10월 30일 | **발행인** 주형철 | **편집인** 김창희
등 록 2009년 10월 30일 ISSN : 2092-8025
발행처 135-846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5-24 모아코 빌딩 8층
Tel 02)563-4955 Fax 02)563-4929
디자인 좋은누리 02)2269-6041

CONTENTS

KISO저널

2009 Fall Vol. 1

창간사

02 인터넷자율규제 논의의 중심축 되길
주형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

발간사

03 '열린 논의'와 '건강한 인터넷문화'
김창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06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설립과 그 의미

정책결정 리뷰

10 KISO 정책 1, 2호의 의미와 전망 / 김기중
16 KISO 제1, 2호 결정이 남긴 의미 / 박준석
26 정책결정 제1호
28 정책결정 제2호

<특집>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제1차 KISO 정책세미나]

32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 권헌영
40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 황성기
56 종합토론

해외 동향

64 미국의 인터넷자율규제 구조와 최신 프라이버시 이슈 / 황용석

KISO 기구 정보

7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관
78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80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강령
82 이용자 가이드라인

■편 집 위 원 : **배 영**(위원장.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강안구**(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윤리팀장), **권헌영**(광운대 법과대학 교수), **김유향**(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박준석**(Daum 고객서비스팀장), **안진혁**(SK커뮤니케이션즈 서비스기획실장),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용석**(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창간사

인터넷자율규제 논의의 중심축 되길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주형철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출범한 게 올 3월인데, 달력은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KISO저널] 창간호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창간을 위해 애써주신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인터넷은 계층간 정보 격차를 사라지게 했고, 다양한 문화와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이해의 충돌이 인터넷 공간에도 등장했고, 때로는 현실보다 증폭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세상은 과거에는 존재치 않았던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는 현실의 딱딱한 법규적 제한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정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가장 잘 아는 사용자와 공급자가 스스로 정한 규칙만이 가장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3월 대한민국 인터넷을 대표하는 7개 포털사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를 출범시켰습니다. 각자의 색이 다른 포털사들이 모여 자율 규제를 시도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해 좀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나온 것이 바로 [KISO저널] 창간호입니다. [KISO저널]은 앞으로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한 이론 및 실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의미한 논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KISO저널]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위원과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

발간사

'열린 논의'와 '건강한 인터넷문화'

우리 사회의 인터넷 세상에서 공적 규제의 한계상황이 자율규제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런저런 자리에서 "자율규제가 우선"이라거나 "자율규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치 '자율규제'가 시대정신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는 쉬운듯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고 인터넷 세상과 네티즌들을 둘러싼 환경 역시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KISO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출범해서 이제 반년 남짓 초기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KISO저널〉 창간호에 실린 글들은 그 초기 경험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아 보여줍니다. 일종의 좌충우돌 분투기이기도 하고, 초기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문의 성격도 있습니다. 또 난감한 법률 환경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글이 있는가 하면, KISO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애정 어린 질타의 내용도 있습니다.

모두 귀담아 들을 얘기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흘려버릴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가 가야 할 길을 선취해서 보여주신 KISO 안팎의 모든 필자들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차제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일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뜻있는 연구자들과 시민사회의 논의 결과로 태동했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터넷 자율규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생산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땅의 인터넷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어깨동무 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KISO저널〉이 그런 논의의 열린 터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막 태동해 걸음마를 시작한 신생기구 KISO가 제 자리를 잡고 결실을 내기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터넷 규범에 관심을 갖는 모든 관계자들이 이 공간을 통해 아낌없는 질정을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만개하면서도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금도로 작용하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김창희

www.kis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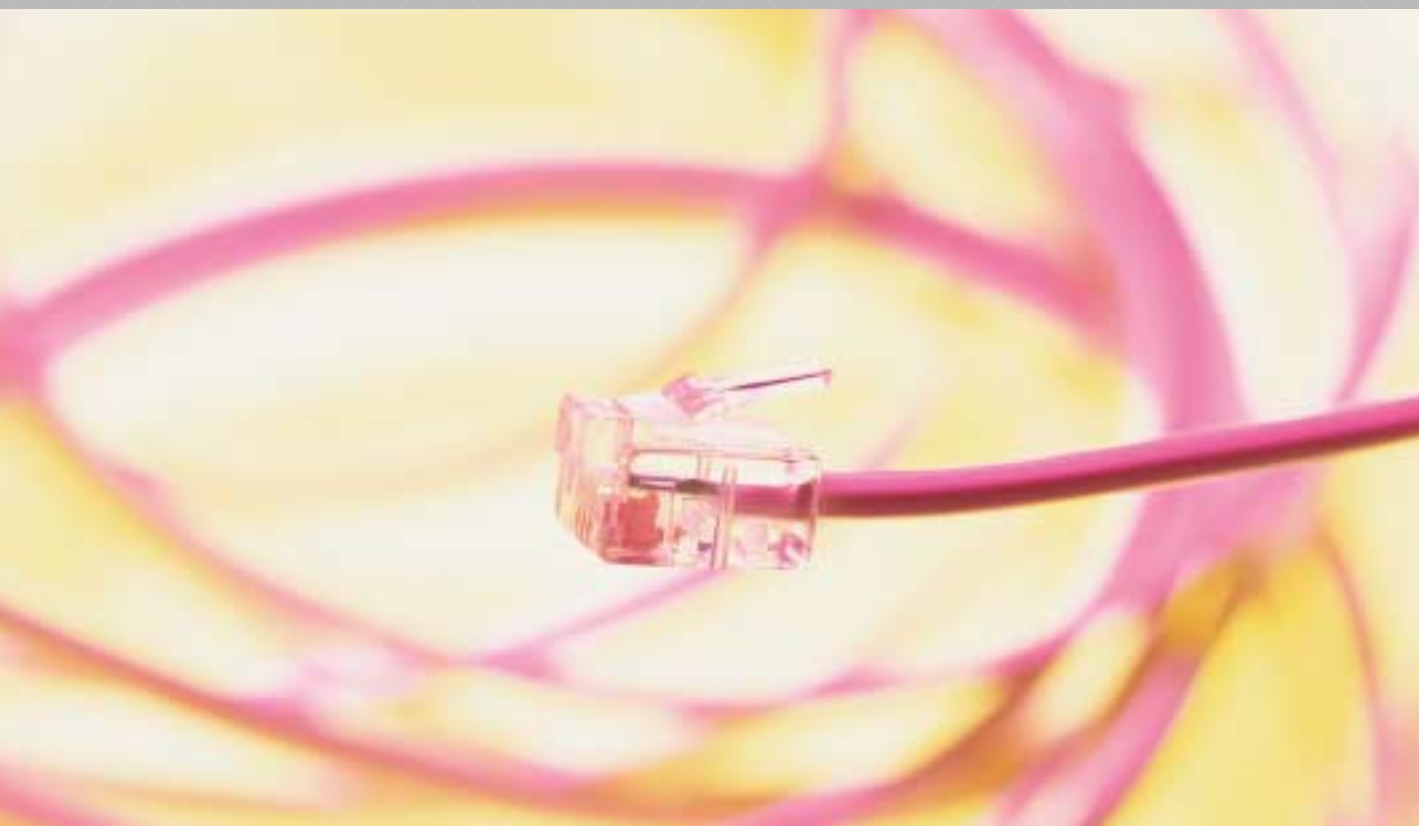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설립과 그 의미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미국, 유럽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90년도 후반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보호(아동포르노 유통금지) 및 인종차별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정착되어 있다. 특히 독일의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는 1997년 e-commerce 협회 및 온라인 사업자 중심으로 설립된 기구로 인터넷 공동자율규제(co-regulation)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는 1996년 10월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기구로서 인터넷 상의 아동 포르노, 폭력성 성인포르노, 인종차별 등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는 1999년 11월 유럽과 미국의 8개 핫라인의 참여로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31개국 35개 회원기관이 참여한 국제적인 핫라인 기관으로서 정부와 민간 부분의 인터넷 공동자율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해외 선진국들은 인터넷상의 자율규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 사회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공감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자, 이용자 등의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율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의 시발점이자 초석으로서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란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가 출범하였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를 실현함으로써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공공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설립목적

-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선 구현
-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으로 인터넷 공간의 질서와 합의 도출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인터넷 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KISO는 회원사 게시물 정보의 건전한 유통 및 불건전 정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하여 인터넷 공간의 질서와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메인 홈페이지〉

KISO는 이사회, 정책위원회,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회원사 소속이 아닌 인터넷 자율규제 전문가 5인과 회원사의 게시물 관리 · 운영 부서의 책임자급 7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게시물 정책의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무처는 신고센터 등 실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와 정책위원회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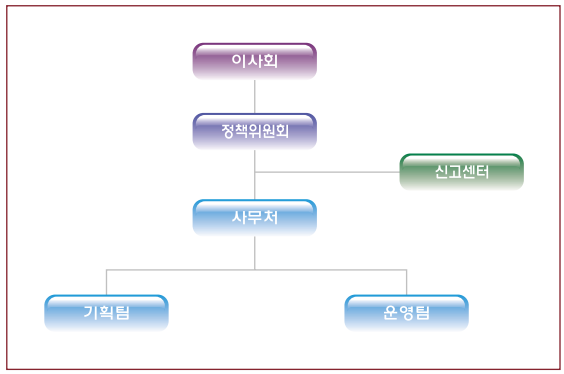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 조직도〉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정책위원회의 주요업무는 회원사 게시물 중 불건전 정보에 대하여 공동의 대응책을 논의 · 결정하는 것이다. 주로 회원사가 요청한 게시물, 이용자가 신고한 게시물, 사회적 현안이 되는 게시물 등을 처리한다.

대부분의 회의는 신속한 결정 및 처리를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게시물이란 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정책위는 '전원합의' 구조로서 이는 소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결정을 하되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한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토론이라는 숙의적(熟議的) 합의 구조를 통해 해결책을 구체화해 나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각사의 게시물 정책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의사결정은 외부의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정책위원회는 수차례의 온 ·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취급 방안을 결정하였으며 지난 4월과 6월에는 신고요건, 처리대상, 처

리방법, 제한조건 등을 골자로 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신고센터

KISO는 회원사 게시물 중 불법, 불건전 게시물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안내를 수행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KISO 홈페이지의 신고센터(www.kiso.or.kr)를 통해서 신고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불법정보, 음란정보, 청소년유해 정보, 명예훼손등 권리침해정보 등이다. 신고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자의 개인정보, 신고주소, 신고제목,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기재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KISO에서는 일단 회원사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신고 정보 중 사회적 현안 등 정책결정이 필요할 경우 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또한 불법정보 중 별도의 처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안내한다.

신고 대상 및 처리

(정책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 불법정보
  - ※ 단, 선거법 등 명백하게 처리할 기관이 있는 경우는 해당기관을 안내
- 음란정보
- 명예훼손등 권리침해정보
  - –이용자에게 각사로 신고토록 안내
  - –사안에 따라 위원이 안건상정 가능
- 청소년유해정보 : 각사 처리 안내
  - ※ KISO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되면 각사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KISO에서 이용자에게 통보

〈이용자 신고 화면〉

구체적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신고센터 개설(2009.4월) 이후 2009.10월 현재까지 총 120여건이 신고접수되어 모두 회원사 단위에서 처리되거나 정책결정으로 이어졌다. 신고유형을 보면 청소년유해 게시물 43%,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정보가 24%, 불법정보가 10%, 기타 게시물 23%에 이른다.

마무리 하며..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 스스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KISO는 인터넷사업자의 공동 자율규제라는 큰 틀 속에서 실효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www.kis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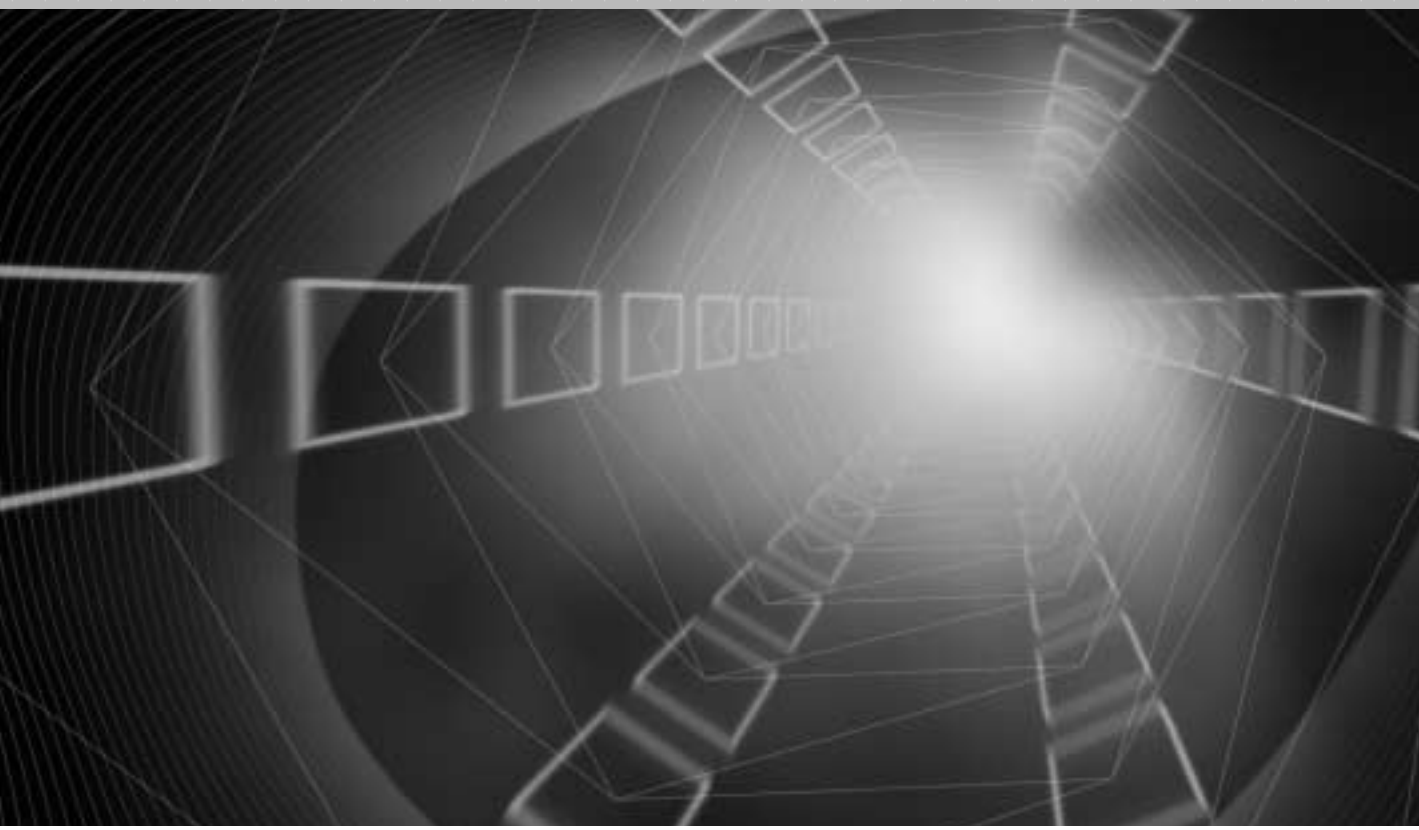

정책결정 리뷰

-. KISO 정책 1, 2호의 의미와 전망 / 김기중
-. KISO 제1, 2호 결정이 남긴 의미 / 박준석
-. 정책결정 제1호
-. 정책결정 제2호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 정책 1,2호의 의미와 전망

김 기 중*
변호사(동서파트너스)

1. 들어가며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09. 4. 21.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에 관한 1차 정책결정을, 2009. 6. 29.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의 추가적책"에 관한 2차 정책결정을 하였는데, KISO의 '정책'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의 집행력이 있는지, 그러한 집행력이 법률이나 법원에 의해 뒷받침될 것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KISO는 비록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정책 등에서 영향력이 큰 대부분의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모여 KISO가 정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의미가 무척 크나, 이른바 '자율규제'의 전통과 문화가 취약한 한국에서, 민간기구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사회 일반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도 현실이다. 더구나 민간기구가 정한 정책과 결정에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 문제까지 고려하면, 갈 길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KISO의 정책은 뜨거운 사회적 이슈인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포털의 이용자에 의해 게시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인터넷이 널리 이용된 때부터 계속되어 온 오래 된 '현안'으로, 권리주장자나 게시자는 물론이고 게시판 운영자를 괴롭히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나, 그렇다고 적절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끊임없는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경험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배경일 것이다.

언론과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으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KISO의 정책이 갖는 의미를

* 김기중 변호사는 2009년 9월 1일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 글은 정책위원 위촉 전에 집필됐다.

살펴보고 전망을 해 본다.

2. 정책의 적용 대상 – 게시물

KISO 정책의 적용대상은 게시물이다. '게시물'이란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문자, 화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1]로 정의되어 있다. 요컨대, 법률상 '게시판'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 둘째, 일반에 공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운영자가 직접 정보를 게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이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호)를 무선통신을 포함하는 무척 넓은 개념이다. 결국 '게시판'의 범위는 기술적 기준으로 제한할 수 없고, "일반에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용자가 게재하도록 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의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고 다양한 인터넷에서 '게시물' 또는 '게시판'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트위터'의 'twitt'이나 '미투데이'의 '단문'은 게시물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문블로그 서비스는 "개인간의 사적 메시지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하며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나[2], '트위터'나 '미투데이'에 게시된 '사적 메시지'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게재하는 정보"라는 게시물의 정의에서 제외될 것인지 의문이다.

"게시판' 운영자"는 실명제(본인확인제)를 채택할 의무가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시조치 등의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제44의5와 달리 '게시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라는 요소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단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므로, 제44조의2의 적용대상은 '게시판'과 사실상 같은 것이다.

결국, KISO의 임무 및 정책의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관한 자율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는 '자율규제'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KISO의 설립과 활동은 법률적 근거라는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9호
2) 연합뉴스 2009. 7. 16.자 "방통위, 트위터 실명제 적용 안한다." 기사

따라서, KISO의 정책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내지 제44조의3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고, 굳이 '게시판'의 개념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법률적 성격

KISO의 임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성격이 문제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강제적인 규정으로 볼 경우 KISO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그대로' 집행하는 수준의 정책을 낼 수 있을 뿐이나, 그렇지 않다면 KISO에게는 폭넓은 정책형성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은 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서비스제공자의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 그 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강행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저작권법상 notice and take down 규정을 모델로 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이런 제도의 연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온라인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면책규정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 사업자 연합체)는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는 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지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4. '임시조치'의 절차

가. 개요

정책 1,2호은 그 주요 관심을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대상, 처리절차 등의 '절차적 문제'에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임시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임시조치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동안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 사이에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KISO의 정책 1,2호는 적어도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 사이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절차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 권리주장자의 범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받은"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일정한 사법적 판단을 이미 "받은" 자에 한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기는 하나, 운영의 현실은 침해에 관한 '당사자'라면 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은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침해의 '당사자'임을 밝혀야 할 것이고, 정책은 위와 같은 원칙도 밝히고 있다.

다만, 정책은 단체의 장이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주장자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임시조치 제도가 무분별하게 행사되어 남용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으로,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명예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한 현명한 정책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책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잡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을 하였고,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KISO의 입지를 키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범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러한 원칙이 권리주장자나 정보게시자 등에게 보다 더 쉽게 수용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 권리주장의 방법과 대상

권리주장자는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하고, 명예훼손의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URL이 지정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창작 게시물은 물론 이 내용을 스크랩한 게시물, 위 창작 게시물에 대한 딥링크 게시물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당해 정보"의 삭제 등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는 정책적 입장은 법률의 규정에도 부합한다. 또한 제3자의 명예훼손 게시물로 인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요건을 정리한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3 전원합의체판결도 "구체적 · 개별적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는 정책의 입장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URL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구체적인 게시물을 '검색' 또는 '찾아' 임시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위 법률과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은 포괄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3] 에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URL의 적시가 없더라도 적어도 "문제가 된 화면 캡쳐 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지적은 있어야 하고, 그 임시조치의 대상도 '딥링크 게시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의 범위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게시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 선택으로 이해된다.

3) 정책 제1호는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가 가능한 경우를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외에 "명백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였으나, 제2호에서 "명백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의 예외적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수정은 타당하나, 제1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음을 명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 권리주장에 대한 처리방법과 처리 이후의 절차

권리주장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는 '임시조치'를 취한다. '임시조치'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 30일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정보통신망법은 '임시조치'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맡겨져 있으나, 위 정책에서 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KISO는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 부분을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빠른 정책수립을 기대해 본다. 다만, 000 의원 외 ?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은 '임시조치' - 재게시 요청 - 분쟁조정위 이관 - 결정 - 사법절차 이관 이라는 절차적 해결방안을 도입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절차적 해결을 도입한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해결방안이 입법화되면 임시조치 후의 절차는 많은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개정법률안들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KISO에서 선제적으로 절차적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 간다면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방향에도 일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마. 권리주장이 아예 없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방법

대법원이 위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판시 부분은 피해자의 권리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했다는 점에 있다.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서비스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 해당 게시물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정책은 위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KISO에 상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정책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정책의 위 규정과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원리는 조금은 다르다. 위 전원합의체판결은 서비스사업자가 '그 게시물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상황"을 지적하여 '사업자의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인데, 정책은 "심각한 명예훼손",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 등으로 명예훼손의 '중대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둔 듯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왜 위 전원합의체판결과는 조금 다른 요건을 제시하였는지는 알 수 없어, 그 의미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정책의 위 부분이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명예훼손의 '중대성'은 해당 게시물의 존재를 사업자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상황"의 중요한 징표이기는 하나,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외관상 명백한 상황"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정책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직접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상술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확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실체적 판단 기준

정책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실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임시조치' 제도가 온라인 명예훼손 게시물의 문제를 절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어떤 기준에 의해 '명예훼손'을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주장자에게 '소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4] 정책도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도 안이하게 임시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으나, '소명'의 다양성에 비추어 '소명'의 적극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으로 보이므로, '소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전망

KISO가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회원사가 이를 따르는 방식의 자율규제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서 예정하고 있는 자율규제활동이므로, 법률과 판례의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KISO의 정책 1,2호는 법률과 판례의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균형잡힌 정책적 선택으로 보이므로, 사회적, 법률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에 따라 KISO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한 포털사업자도 그러한 조치로 인한 책임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포털사업자가 투명한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처리를 할 경우, 그 이용자의 활동와 표현의 자유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KISO

4) 사법절차까지 자동으로 이행되는 프로세스에 의해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위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도 권리주장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KISO 정책 1,2호 결정이 남긴 의미

박 준 석
Daum 고객서비스기획팀장

1. 머리말

인터넷이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여론 형성의 중요한 매개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오가고, 그 목소리들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렇게 인터넷이라는 그릇에 담긴 네티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 중 '명예훼손'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OSP로 하여금 판단이 애매한 경우, '임시조치'를 취하면 면책토록하는 법이 생기게 되었다. 과거 개똥녀 사건과 같은 '마녀사냥' 식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임시조치'라는 제도를 둔 것인데, 최근에는 신청 절차에 제한이 없고, 소명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무차별적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힘이 없는 게시자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듯한 경향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OSP들이 직접 나서서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서, 법률의 미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관련된 판례를 연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를 주장하는 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한 게시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 정책을 발표했다. 그것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KISO 제1,2호 정책 결정이다.

2. KISO 제1,2호 정책결정 내용 분석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는 2007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애로점이 많은 조항이다.

인터넷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서 해석이 분분하고, 최근에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권리를 침해 받은 피해자의 구제 측면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일반 네티즌들은 이런 법제도가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최근 들어 본인이 작성한 글

이 '임시조치' 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고서야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법을 제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OSP는 신고자와 게시자 사이에서 양쪽으로 뺨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이에 KISO의 제1,2호 정책 결정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임시조치'가 오남용 되는 역효과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묻어남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1 처리 기준의 통일

KISO의 7개 회원사는 2007년 7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된 제44조가 시행된 이후, 각 회사별로 법을 해석하고, 처리 절차와 게시글의 삭제 방식 등을 결정했다. 따라서, 회사별로 약간씩 방식에 차이가 있었고, 2008년에는 '임시조치' 건수가 늘어나면서,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일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번 1, 2호 결정에서 먼저 다루게 된 것이 각 회사의 절차를 공개하고, 통일된 기준을 가져가는 것이었다.

1. 명예훼손 성 게시물의 처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신고)이 있어야 한다.

(1) 일반원칙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 딥링크(deep link) 게시물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 각 회원사로부터 임시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이후 추가적인 신고는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개별 회원사가 독자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담감이 있고, 원칙을 세우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었나, KISO를 통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에서 URL적시가 없더라도 충분히 회원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요청이라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원칙을 강요하기보다는 우선 처리를 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리되었다. 동시에 무조건적인 '포괄적 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신고는 '일반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것이 단순히 회원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2호 결정의 2번째 대목, "2.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각 회원사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에서 설명된다.

또, '처리 대상'에 있어서도 '창작 게시물', '스크랩 게시물', '딥링크 게시물'로 구분하였다. '일반원칙'에 따라서 신고자가 URL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소명함에 따라, 신고된 모든 게시물을 임시조치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포괄적 원칙'에서는 신고자가 제공한 캡처 등의 자료를 토대

로 OSP가 명예훼손성 게시물인지 판단하고 임시조치해야함으로 게시물 본문에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딥링크 게시물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2008년 네티즌들 사이에서 있었던, 보수 언론 매체에 대한 불매 운동 당시에 일부 매체로부터 불매 운동 관련 게시물들에 대한 권리 침해 신고가 있었고, Daum은 이를 임시조치를 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침해 사유로 보고 삭제를 통보해왔다. 이후 게시물의 유형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면서 작지 않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해외 사이트에 불매 운동에 관한 정보들을 담아두고, 링크만 걸어두는 식이었다.

2.2 대상의 제한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인으로 하여금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임시조치 제도'의 취지인데, 그에 반해서, 개인보다는 단체, 일반인보다는 공인, 명예훼손보다는 알 권리 혹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임시조치가 오남용 된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일개 OSP가 이러한 게시물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신고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 KISO 결정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로 '처리의 제한' 원칙을 마련한 점이다. – 중략 – 이와 관련해 KISO 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垂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

앞의 문구는 KISO의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이다. 법률적 토대와 회원사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이는 현재 착실히 실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는 뒤에 다루기로 하겠다.

2.3 피해 구제 방안

2.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각 회원사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처리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위의 절차를 따른다.
-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제2호 결정의 2번째 대목에서 다루는 내용이야말

로, 임시조치의 기본 취지를 담고 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 확산을 OSP가 자의적으로 개입해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에서 '임의의 임시조치'를 다루고 있으나, 지금까지 OSP들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44조 2 제6항과 같은 면책, 감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OSP가 위험을 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KISO 회원사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KISO를 통해서 상정하고, 회원사들간에 내용을 공유하여, 빠르게 처리 방식을 논할 수 있게 되었다.

3. 사례 분석을 통한 의미 찾기

2009년 6월 29일자로 결정, 시행된 이후에 KISO 회원사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관계로 특별히 연관 지을 만한 사건은 거의 없다. 그래서, 2009년에 있었던 몇몇 사건을 통해서, KISO 정책결정의 의미를 되짚어보겠다.

3.1 피해자가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연예인 커플의 결혼 소식에 네티즌들이 반기를 들었다. 결혼 반대 운동으로 번지다시피 하면서, 모욕, 비방성 글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를 인지하고 KISO 및 회원사들에 사안을 공유했고, 각기 검토 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던 차에 연예인 소속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악플로 인한 연예인 자살 사건과 같이, 연예인은 공인이기는 하나 사생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존재로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긴박하고 신중하게 처리 여부를 고심했었다. 과연 '임의의 임시조치'를 써야 하는가. 이미 인지하고도 요청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한편으로는 연예인 측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태를 예견했고,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까지 난무했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측에서 내용을 알고 있고, 게시물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만약 KISO 상정 결과 회원사들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선의를 가진 의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임의의 임시조치'를 하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 불거져 피해자 측에서 문제 삼는다면 면책, 감면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괜한 짓만 하게 되는 것일까.

여태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사례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음을 경험한 만큼, 이에 맞는 대책 고심이 필요해 보인다.

3.2 명예훼손? 허위사실?

얼마 전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동영상이 포털사이트에 번지기 시작했다. 최초 접수된 후 이 사건은 KISO의 2호 결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공무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보고, 처리를 기각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문제된 동영상은 명예훼손 이전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허위사실'은 명예훼손만큼이나 OSP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진위여부를 양측의 증명을 받아 OSP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사법부의 결정문을 제

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말이다.

피해 주장자 측에서는 공식 기자회견, 국회사무처의 자료 등을 제출하므로 서 허위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고, 포털사이트는 이를 인정하여 해당 동영상을 '임시조치' 한다.

여기서 논의해 볼만한 이슈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이다. 대부분의 허위사실은 명예훼손의 목적을 담고 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임시조치' 를 하면 된다. 그런데, '허위사실' 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다루고, 처벌조항이 있는 것으로 '허위' 가 명확하다면 불법 게시물로 보고, '삭제' 를 취해야 한다. OSP는 허위사실의 진위도, 명예훼손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명예훼손성으로 보고 '임시조치' 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으로 신고를 받아 인지했다면, 허위사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피해자 구제라는 대원칙을 우선하는 게 옳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처리의 제한"에 따라 공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서 '허위사실' 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정리하면 "처리의 제한"에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여부를 논하지 않고, 명예훼손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서, "처리의 제한" 두 번째 항목을 보면, 공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하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실무적 관점에서 국가기관 및 공인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 시켜 가이드라인을 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전경 간부의 과잉 진압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확산과 같은 경우,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사건인데, 과연 KISO 결정을 적용하는 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계급을 떠나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인 만큼, '처리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지 판단이 쉽지 않다.

3.3 공인의 사생활

8월 중순 또 하나의 사례가 발생했다. 포털의 게시판에 어떤 장관 부부에 관한 글이 실렸고, 신고가 접수되었다. 게시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모 장관 부부가 토요일 저녁에 시내 한복판에서 욕설을 했고, 화가 난 군중들이 이에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신고 내용에 대한 판단은 회원사 내부뿐만 아니라, KISO에서 빠르게 전달되었고, 정무직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여 임시조치 키로 결정되었다.

그렇지만, 주말 저녁에 일어난, 공무 수행 중이 아닌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관의 지위에 있는 분의 행동은 쉽사리 사생활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위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지니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 장관이 실제 욕을 했고, 그것이 동영상으로 제시되었다면 이렇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4. 앞으로의 과제

KISO 제1,2호 정책결정은 그 주제가 무거웠던 만큼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례 하나 하나에 접목시키다 보면 여전히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 2호 결정 말미에 몇 가지 숙제를 남겨놓은 것처럼, 앞으로 다뤄봄 직한 KISO를 위한 숙제를 얘기해본다.

4.1 제1, 2호 결정 이후 생겨난 문제

앞서 3.1, 3.2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나, '허위사실' 여부를 논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다.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다.

첫째, 3.1에서 언급한 연예인 커플 피해자가 게시글 삭제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던 사례를 보자.

작년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터졌고, 그 원인은 인터넷의 악플이었다. 악플로 인한 인터넷, 혹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문제 지적은 그 이전부터 오래도록 문제시 되어 왔다. 그런 만큼,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게는 더 커져가고 있고, 특히 김명재씨와 포털사이트 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다53812) 이후, '명백한 불법성'을 띄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함이 더욱 분명해졌다.

반면, 전경 간부 사건 때에는 포털의 자의적인 삭제 처리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컸다. 당연히 게시글의 내용, 피해 대상 등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져야겠고,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유명한 연예인인 만큼 그들의 결혼이 세간의 관심사는 될 수 있겠으나, 이를 두고 과도한 비방을 한다면 이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사생활 침해라고 단정짓지 않더라도 그러한 게시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털이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2호 결정의 2번째 대목에서와 같이, KISO 상정 후 임의로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삭제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임의의 임시조치'로 취함을 가정해 보겠다.

현재 포털사이트들은 '임의의 임시조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면책/감면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점이 없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 3은 아래와 같다.

그 중, '제44조의2제2항 후단'을 언급한 것은 제2항 앞 단에서 포함하고 있는 삭제、임시조치의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필수 조치사항을 제외시켜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사이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제4항 후단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2 제5항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4조의2 제2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버 테러 수준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 법 취지를 살려 '임의의 임시조치'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임시조치'를 취하나 신청인과 정보게재자(게시글 작성자) 양측으로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인 셈이다. 다만, 그로 인해서 '임의의 임시조치'가 오남용 될 소지가 있으므로 '면책, 감면'의 내용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는 KISO 결정의 2번째 대목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조치 방법이라고 보인다.

두 번째, 3.2에서 언급한 공무원의 공무 중에 발생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는 KISO의 정책결정 문안 –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 에서도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전에 있었던 국회의원의 해외 체류 여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자료를 증빙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KISO의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허위사실을 OSP가 직접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피해 구제 차원에서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법부에서의 판단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 또 사안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테두리 안에서 선 처리 후 보강 식의 대책도 가능할 것 같다. 또, 이것이 KISO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회원사들의 빠른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다.

4.2 제2호 결정 말미에 남겨둔 숙제

『3.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 게시물에 대해 검색 제한'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

제2호 결정에서는 위와 같이 몇 가지 숙제를 나중으로 미뤄두고 있다. 이를 하나씩 짚어본다.

4.2.1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청소년 혹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은 있으나, 정보게재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다. 정보게재자가 이용자이기는 하나, 정보통신망법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에서도 이를 다루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정보게재자는 항상 가해자인 셈이다. 44조의2를 악용하는 이로부터 정보게재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분명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와 같은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임시조치'를 당한 정보게재자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현재 KISO회원사들은 게시글 작성자가 요청하면 임시조치된 게시글을 본래의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재게시 청구' 제도라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면, 요청만 하면 무조건 재게시가 가능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OSP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임시조치를 취한 만큼, 재게시 요청 시, 그것이 아님을 판단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자칫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게시물을 복원한다면, 피해 확산의 주범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판단하여 결과를 회신해 주면 그에 따라 OSP는 복원 또는 삭제 등의 결과를 반영했었다.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접수받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제동을 걸었다. 일단, 게시글로 인해서 피해를 주장하는 자만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게재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를 요청할 수 없고, 반드시 포털사이트에 접수하여 포털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토록 한 것

이다.

또 심의 접수 전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의가 접수되면 피해 주장자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개 회의록에 담겨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보게재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호 또는 관여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결국 정보게재자가 직접 재게시에 대한 요청 및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 주장자의 의지에 달린 것이며, 또한 포털사이트를 통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글이 임시조치 되었을 때에는 이종걸 의원이 직접 심의를 요청했고, 방통심위는 심의 후 해당 게시물을 복원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임시조치'라 함은 말 그대로 임시로 조치해둔다는 의미이다.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조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주고, 일시적으로 가려두라는 것이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보거나, 혹은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가기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이었다. 또, 현재 KISO 대부분의 회원사는 '임시조치' 30일의 해석을 30일간 가려두되 30일 이내에 정보게재자로부터 이의제기 혹은 재게시 요청이 없으면, 삭제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정보게재자 입장에서는 임시조치는 곧 삭제를 의미하는 셈이 된다.

결국, 현재 회원사들은 재게시 요청이 접수되면, 피해 주장자에게서 심의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게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최초의 법 취지 및 적용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30일 이내의 빠른 심의는 온데간데 없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도 활성화되지 않고, 모든 짐은 OSP가 안고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KISO는 '임시조치'의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재게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에 대한 제한만큼이나, 신청된 후의 복원이라는 '후처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어쩌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전'보다는 '사후'일 수 밖에 없다.

4.2.2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룰 듯 한데, 하나는 그 동안 문제 삼았던 이용자 통보 방법이고, 또 하나는 30일 후 조치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이용자 통보 문제는 위의 4.1 대목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신청인, 정보게재자 양측 모두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게시판에서 이용자들이 확인 가능하게끔 표시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30일 후 조치는 일반적인 '임시조치'와 동일하게 가져가고, 재게시 등의 문제는 동일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본다.

5. 제1,2호 결정이 남긴 의의

KISO 제1,2호 결정은 주제 선정에서의 시의 적절함, 내용면에서의 가치 있는 시도 등으로 KISO의 첫 번째 정책 결정으로 손색이 없고, 앞으로의 방향 제시에도 좋은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2008년부터 임시조치가 적용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그 동안 신고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중요시 되었다면, 이제는 게시자의 권리에 대해서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때이다. 굳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신고자의 손을 먼저 들어주는 시스템이기에, 법안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보였다. 그런 차에 나온 결정이라 그 의미가 크다.

'처리의 제한'은 KISO 내부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 의미가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인지,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용될 지 의문이 없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자리 잡는 것은 KISO의 입지를 구축하는 첫 걸음인 셈이기도 했다. 최근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이슈는 명예훼손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어졌다. 대신 허위사실로 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긴 했다. 이 문제는 따로 짚어야 겠지만, 어쨌든 역설적으로 KISO 정책이 실무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더 큰 가치는 KISO의 제1,2호 정책으로 인해서, 회원사들이 사이버상에서의 권리침해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는 구체화된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다시는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절차를 더욱 공고히 하고 회원사들은 KISO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6. KISO가 나아가야 할 방향

끝으로, 가볍게 KISO를 향한 큰 주제를 몇 가지 던지고 마무리 짓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KISO는 당연히 회원사를 포함한 것이다.) 어쩌면, 칭찬보다는 고민만 남기는 문서가 되는 것도 같아 송구스럽다.

첫째, 아직도 약간의 혼란을 갖고 있는 KISO의 방향성, 성격, role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KISO의 사업계획과도 관련이 있다. 단지, 정책 결정, 심의, 상정 등의 현안 문제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가령 중장기 프로젝트로 한국형 자율규제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로드맵을 작성하여, 2010년 하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오고, 실제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결정되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심의, 상정에 대한 논의가 완성되면, 수시로 상정 논의하게 될 테고, 그 때에는 신속한 판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당장은 '선 처리 후 상정'으로 진행하지만, KISO의 설립 취지는 '선 상정 후 처리'를 통해서 회원사들의 공동 결정을 반영하여, 개별사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로드맵을 짜서 상정에서 전체합의까지의 시간 단축을 주요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결정에는 KISO의 이름이 붙고, KISO의 결정이 되는 것이다. KISO의 위상을 강화하고, 입지를 튼튼히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본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말이다.

KISO가 나아가야 할 자율정책기구로서의 첫 시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필자는 자신한다. 장차 규제의 자율과 타율 사이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의 가운데에서, 네티즌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합일 점을 찾으러 떠나는 데에 있어, 힘겨운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더 가치 있는 결정들이 이어져 나오길 기대한다.

그럼, KISO가 한국형 자율규제 모델의 표준이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KISO

정책결정 제1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09. 4. 21)

1.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제기(신고번호 KI090406160001)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1) 일반원칙

-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딥링크(해당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단,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년 4월 16일,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거나 명백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이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한다.

(3)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 · 차단

- 정보통신망법상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 · 차단은 그 적용요건에 대한 판

단의 어려움과 위에 언급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당초 상정된 정책안의 대상이었던 이종걸 의원 발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각사가 자체정책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명백한 불법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이번 정책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KISO

정책결정 제2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

KISO는 2009년 4월 21일의 제1호 정책결정에 따라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 · 임시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한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정책에 따른 처리의 대상은 각 회원사의 게시물로 제한한다.

1.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신고)이 있어야 한다.

(1) 일반원칙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고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 딥링크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⑵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 각 회원사로부터 임시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추가적인 신고는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각 회원사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처리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위의 절차를 따른다.
-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3.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게시물에 대한 검색제한'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 KISO

www.kiso.or.kr

<특집>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제1차 KISO 정책세미나]

-.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 권헌영
-.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 황성기
-. 종합토론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권 헌 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과학기술법학과 교수

Ⅰ. 들어가면서

드디어 한국에서도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대체로 한국의 토양에서 정부와 손을 잡거나 혹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생소하다. 거기다가 이들은 정부와 거리가 있다고 그들의 강령[1]에 자신 있게 표현하면서 그 '자율'과 '독립'의 진정성을 보이려 애쓰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2]이다. 2009년 3월에 만들어졌고, 아직은 인터넷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7개 회원사만 참여하고 있다.[3] KISO는 만들어지면서부터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언론을 향하여 뭔가 내어 놓고 있다.[4] 아마도 KISO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무의식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인터넷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적 여론과 정부가 있을 때는 이런 논의가 연구에 머물렀었다.[5]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1년 만에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 중에서 특히,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그것도 가장 매출액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으니 KISO는 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기대된다. 급박하게 구성되고 신속히 뭔가를 내어 놓고, 세상을 향하여 존재

*이 발표문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세미나(2009.9.29)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완성된 논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1)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강령 제5조 독립적 운영 "우리는 이해관계, 부당한 외압 등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운영하며, 정부기관의 조치 및 협조 요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검토한다."
2)영문으로는 KISO(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라 부르고, http://www.kiso.or.kr/라는 인터넷주소를 쓴다.
3)그런데 왜 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는 거창한 이름을 썼을까? '인터넷종합정보서비스제공자 자율정책기구' 또는 '인터넷포털사업자 자율규제기구' 정도의 이름을 써도 될 듯한데, 이런 이름을 쓴 것은 우리의 척박한 토양에서 아마도 그 비전이 크고 의욕도 대단하다는 뜻으로 새기고 싶다.
4)KISO의 게시판에는 언론 홍보건수가 12건으로 가장 많다(http://www.kiso.or.kr/news/pr.php).
5)인터넷자율규제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말부터 시작되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가장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어찌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그 때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를 알리는 KISO는 이들이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 대한 '미디어적 규제'가 지난 한 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역시 '급박하게, 그리고 신속히, 세상을 향하여' 쏟아져 나왔다.[6]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원하던 '숙의구조'는 진행중이다. KISO는 정책결정을 두 개 하였고,[7] 이러한 정책결정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정책세미나와 같은 '숙의구조'는 당연히 예정된다. 우리가 원했던 '숙의구조'는 그간의 연구를 통해 논의되었던 사실들을 모두 펼쳐두고,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장기간에 걸쳐 그 시행을 고민한 끝에 누구도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빠져나갈 수 없는 스스로의 규제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숙의구조'도 차선은 된다.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나서서 스스로의 이해를 떠나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소 급하긴 하지만 좋은 출발이다.

이 발표는 KISO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KISO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통해 그만큼 성장하였음을 대내외에 보이는 시금석이다. 그것은 바로 KISO가, 우리에게도 '근대적 시민인 네티즌'이 존재하고, 우리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기업문화'가 존재하며 우리에게도 '합리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제하는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고 남들도 믿게 하는 '선진성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II. 왜 자율규제인가?

1. 자율규제의 토양

KISO는 자율규제기구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자율규제하겠다는 것인가? KISO는 그 정관에서 스스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KISO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지만,[9] 중요한 정책의사결정은 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그 기능[10]은 다음과 같다.

1. 기구 강령 및 가이드라인 수립
2.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물 처리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제 자율규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KISO는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KISO는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1. 기구 강령 및 정책결정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안 마련
2. 위원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정책 결정
3. 합리적인 게시물 정책 수립을 위한 기타 사업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것도 주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사업자의 '임시조치'를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자의 조치'를 위한 판단을 대행하는 기구로 운용[11]

6)미네르바사건, 포털책임에 관한 대법원판결, 사이버모욕죄 신설추진, 검색서비스사업자 규제법 상정 등이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7)http://www.kiso.or.kr/news/decision.php에 가면 내용을 볼 수 있다.
8)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관 제4조(기능)
9)http://www.kiso.or.kr/introduction/organ.php에 가면 의사결정구조의 조직도를 확인할 수 있다.
10)같은 정관 제30조(기능)
11)KISO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는 우선 정관의 기능을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 삼는 것으로 고민을 시작하면 될 것 같다.

되고 있다.

KISO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율규제의 본질적 문제에 관한 의문은 남아 있다. '자율규제'도 엄연한 규범이다. 이른바 규범이라 함은 사회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준칙으로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정한 사회적 제재를 받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니, 일단 누가 준수하여야 할 것인지가 분명하여야 하고, 무엇이 행동의 준칙인지가 명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찌할 것인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규범의 준수가 기대되고 그 규범의 생존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KISO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뭔가 혼동이 있어 보인다. KISO는 스스로를 규율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규범을 준수하는 이가 '스스로'가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규범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12] 자율규제의 성공을 위하여 진정성을 갖고 나섰다면 인터넷의 주인인 '이용자'를 잘 모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13]

다음으로 남는 의문은 그러한 규범이 왜 자율규제여야 하는가이다. 전통적으로 자율규제는 단일한 규범집행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할권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유용하였다. 미국처럼 연방국가에서 국가의 권위에 의할 수 없는 주간(interstates) 상사분야나 국제상사분야 등에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규범 준수자가 특정집단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성질이 균등할 때 즉, 균질적인 수범자를 대상으로 할 때 자율규제는 성공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 의사 · 교원 등과 같은 전문 직업 집단의 자율규제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규범집행자가 규범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도 자율규제는 선호된다. 표현의 자유와 같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표현권자와 대립하는 당사자인 국가권력은 그 스스로를 자제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옹호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14]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KISO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KISO는 하기에 따라서 이 모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자율규제의 토양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자율규제의 토양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KISO가 표방하는 자율규제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까지 이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2. 자율규제의 장점과 한계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율규제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 전통적으로 자율규제는 규제비용이 저렴하고, 규제집행의 거부감이 적으므로 순응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당연히 만족도도 높을 수 있다. 자율규제는 기본적으로 연성의 규범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 적합한 전문적 · 기술적 정의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한계도 당연히 존재한다. 실효적 집행과 불복의 경우 및 수범자가 불분명할 경우 '착한 수범자만 손해 보는' 일도 존재한다. 이때 가장 괴로운 점은 행위공간이 다양한 수범자가 특정 자율규제 공간을 이탈하는 경우이다. 자율규제의 토양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KISO의 정관을 보면 탈퇴가 자유롭다.[15] 이때 받는 제재는 겨우 회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일 뿐

12)이렇게 되면 '포털권력'이라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
13)만일, 임시조치 여부 판단만을 의뢰하여 맡긴다면 '자율심의기구'에 그치게 되고 이는 사회적으로는 방통심의위가 일을 잘 하면 되는 부분이다.
14)미국 헌법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국가형성의 기초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전통의 수립이 일반화된다. 현대선진헌법 국가에서는 국가가 직접 표현의 자유를 다스리는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물며 이들은 '사적 검열'이나 '사후적 규제'에 따른 위축효과까지도 고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15)같은 정관 제8조 제2항

이다.[16] 징계는 제명이 제일 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17]은 KISO의 규범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법규범이다.

KISO는 자율규제의 장점으로 무엇을 갖고 있는가. 영향력 있는 인터넷포털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적 성격'의 '표현 시장'으로서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점유율로 치면 대한민국의 인터넷자율규제의 성공을 점칠 수 있는 부분이다. 점점 더 많은 네티즌들과 시민들이 '표현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인 권력'이 나서서 직접 규제를 하겠다는 시도에 반대의견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국가라고 하는 단일하고도 강력한 규범집행자가 있고 수범자가 온전히 그의 관할권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의 '승인-그것이 적극적 승인이건 묵인이건' 내지는 자제를 필요로 한다. KISO는 이런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

게다가 KISO가 만일, 당면한 기업경영 상의 애로 문제만을 해결하는 창구가 된다면 그 비전에도 불구하고 수범자의 획정이나 실효성의 확보 등과 같은 '신뢰의 틀'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자율규제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3. 한국에서 자율규제의 성공조건

KISO가 활동하게 되는 한국의 자율규제적 토양을 살펴보자. 우리는 미국과 달리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사회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범을 정하고 있다. 물론, 1987년 헌법 개정 시에 비할 때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헌법에서 미국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인터넷이 가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옹호하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다양한 입법은 여전히 합헌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에 의하여 표현 그 자체가 세상에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열'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현된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그 책임을 묻는 구조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 그 표현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수준이면 범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토대에서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를 위한 '규범'의 정립이 매우 중요해진다. KISO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헌법보다 더욱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수준의 결정을 해 나간다면 문제를 가진 이들은 KISO 대신 국가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국적 자율규제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점에서 KISO가 정책결정을 하는 때에 법원의 견해를 면밀히 살피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위와 같은 헌법적 규범에 따라 우리는 인터넷에 관한 정부규제 기관을 매우 다양하게 여러 층위에서 보유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정책적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자율규제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은 바로 형사사법기관이다. 형사사법기관은 경찰, 검찰 등은 물론 다양한 사법경찰(예를 들어 불법소프트웨어단속권을 가진 공무원, 내사 · 외사 등의 권한을 가진 정보수사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제환경은 다분히 한국적이다. 실제로 사업자에 의한 임시조치는 정부의 집행명령서(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거부 · 정지 · 제한 명령)와 같은 행정처분보다 해당 수사기관의 출두요청 전화가 더 위력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한국적 환경에서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더 자

16)같은 정관 제8조 제2항
17)같은 정관 제8조 제3항

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의 자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가기관의 자제는 그것이 '권력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당사자로서 부당히 개입하는 것임'을 시민사회가 확인하는 것으로 얻어야 한다. 결국 국가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여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나설 경우 그것이 국가권력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인터넷의 발달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현재적 상황에서 볼 때 KISO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제로,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의 자제로, 방통위는 형사사법기관(정보수사기관 및 이른 바 권력기관)의 자제로 자율규제의 성공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제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자제하는 이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신뢰는 그의 임무와 그의 이익을 이해하고 자율규제가 추구하는 임무와 이익의 타협선을 찾아나감으로써 얻어야 한다. 그 공동선을 이탈하는 이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신뢰구축의 틀을 쌓아야 한다. 결코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협력적인 구도여야 한다는 말이다.

Ⅲ. 인터넷자율규제와 KISO의 과제

1. KISO의 기능 실질화

KISO의 비전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자율규제기구'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러 가지 한국적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출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능이 겨우 회원사들의 책임을 감면하기 위하여 게시판의 내용을 심의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곤란하다. 그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률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신속하게 답을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방통심의 심의를 받으면 공적 판단을 받은 것이니, 사업자로서는 더욱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KISO가 정부규제로부터 승인을 얻는 것은 그 활동이나 심의의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KISO의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번복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KISO의 본질적인 힘은 모든 인터넷참여기업으로부터 보다 강력한 자율규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넷기업이 수범자로서의 자세를 갖고 KISO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 부분은 정부규제가 도와야 할 지점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규제기관이 KISO로부터 이탈하는 사업자를 바라보고 있는 점만으로도 KISO는 실질적 자율규제기관이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법제를 통해 특정한 인터넷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가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법이다. 변호사 · 의사 등과 같이 전문직업군에 대하여 강제로 시행하는 형태이다. 다만, 인터넷사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체계화하여야 전문직업군과 같은 수준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KISO 기능의 실질화를 위하여 자율규제의 토양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의 고려가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는 대외적으로 관할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관하여 고민하는 것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인터넷포털이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한국어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한국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의 연대[18]를 통해 KISO의 존재를 명실공히 국경을 넘는 자율규제기구로 만드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한

18)없다면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류의 문화적 잠재가치 등을 고려하면 정부와 국가가 이를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19]

둘째는 회원사 내부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인터넷문화규범을 형성하는 것이다. 본디 자율규범이라는 것은 외부적 규제로는 달성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규제나 국가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비교적 사소하지만, 인터넷기업이나 이용자등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규범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참여기업이나 전문가 들이 이러한 규범을 목록화하고 논의에 부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내용규제적 사항도 있겠지만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KISO가 기업활동이나 시장질서에 관한 사항도 규범으로 정립한다면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기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분야별로 존재하는 기업협회 내지는 산업협회는 일정부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구성의 개방과 참여의 보장

KISO가 실질적인 인터넷자율규제기구로 자리매김하려면[20] 현재보다 구성에 관한 고민을 더 하여야 한다. 즉, 초기 단계의 의사결정체계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의 거버넌스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인터넷사업자 중 일부라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물론, 방통심의위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상위적 개념의 기구를 두고 분야별 자율규제기구(예를 들어 포털, 게임, 상거래 등)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처음에 밝힌 바와 같이 비전과 명칭 등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이사사와 참여회원사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고민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규제기구를 회원사가 직접 참여하여 그 결정을 하여야 하는 체계에 의할 것인지도 고민하여야 한다. 회원사가 의사결정체를 구성하고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단 사전에 합의된 규범의 집행과 준수의 시기에도 스스로 참여한다는 것은 규범의 순환구조상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구조형성에 깊이 관여하되 의사결정은 독립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이용자 내지는 일반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이를 대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문가보다 파워유저나 네티즌 대표가 상징적으로라도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서 입후보를 거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의원 등을 선출함으로써 KISO의 자율규제기구성을 보다 극적으로 표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규제와의 협력

한국적 상황에서 KISO의 성공여부는 정부규제와의 관계설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KISO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분야에 관한 법적 심의기구이므로 KISO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은 본질적으로 방통심의위의 권한과 겹칠 수밖에 없다.

방통심의위는 규제기관이고, 자율규제기구는 자

19)현재 정관(제4조)에서는 '국제 자율규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참여'를 정하고 있지만 이 보다는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KISO의 국제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존의 국제기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국제기구가 모두 한국어서비스와 큰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20)사실, 이미 KISO는 성공적인 홍보전략과 사회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훌륭한 브랜드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이런 실질적 기능을 가져야만 한다. 만일, 이런 실질화에 실패한다면 그 반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사회적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율기관이므로 각각의 역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좋다면, 자율기구가 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고, 빨리 공동규제의 틀을 정립하자면 규제기관이 권한을 유보하면서 자율기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기구는 성장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방통심의위는 법적으로 그 권한과 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KISO가 방통심의위와 함께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방통심의위원회가 자율규제기구를 인큐베이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일부 기능에 대한 위탁이 가능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방통심의위가 자율기구의 판단부분을 용인해주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겠다. 또한, 조직구조와 각 협력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적 관점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을 상호계약의 방식으로 스와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의에 관한 사항은 공유 또는 분할하되, 분쟁조정은 방통심의위에서 전담하는 등의 조치와, 그에 따른 비용보전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쟁조정기능은 어디에서 맡아서 운영하든 법원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문제가 없다. 다만, 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성과 비용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공 분쟁해결제도가 더 나을 수도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신속조치와 법률 집행이 실질적으로는 심의 이상의 효과를 내기도 하므로, 관계기관과의 핫라인 형성과 같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하고 take down하는 사례보다 경찰서나 검찰에서 수사에 돌입하고 take down하는 것의 실질적 압박감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런 노력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시스템은 해당정보가 명백히 불법인가의 여부가 분명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KISO의 다른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공적 규제와의 협력을 고려할 때 분쟁조정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자율기구의 업무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분쟁조정은 법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일이므로 공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조정'이라고 하는 분쟁해결방식은 근본적으로 당사자의 승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해당 조정에 대한 최종적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에 있어서도 자율기구의 결정보다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인 공적 결정을 더욱 신뢰할 것이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4. 국제적 활동의 강화

국제적 활동은 홍보, 공조, 해외진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미 정관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해외의 다양한 국제적 자율기구와의 협력은 예정되어 있다. KISO의 해외진출에 관한 전략적 비전도 포함되어 운용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험을 살려 한국형 자율규제기구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적 방법론 등을 형성하는 노력이 우선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Ⅳ. 나오면서

KISO와 자율규제에 관하여 두서없는 의견을 정리하였다. KISO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제한적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너무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불편한 의견을 전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O는 한국 인터넷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KISO는 그 이름 자체가 한국 인터넷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바라는 실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KISO가 어느 순간 누군가

의 아이디어에 의하여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란 뜻이다. 그러므로 KISO는 모든 한국 인터넷 참여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적 모습과 한계를 인정하지만, KISO의 원래적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한국 인터넷 참여자가 도처에 존재한다는 점이 KISO의 본질적 힘이다.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인터넷의 참 주인은 네티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네티즌은 현재의 이용자는 물론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민이자 시민이다. 인터넷은 개별 이용자가 중요한 문화로 출발하였다. '회원님'들로 구성된 인터넷 문화가 어느새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전락하고 누구는 의사를 결정하고 누구는 소외 받고 누구는 이익을 가져가고 누구는 아픔을 떠안는 '보통 사회'의 '보통 문화'로 인터넷은 변화하여 갔다. 아니, 보통 보다 더 '저질스런 문화'로도 변화하여 갔다. 여기에 인터넷에 대한 '타율적 규제'의 논거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KISO는 인터넷의 본질적 문화와 가치인 '참여', '개방', '공유'를 회복하고 네티즌을 섬기는 '가치 중심'에만 서서 현재의 고민을 하면 된다. 그러면, 늘 곁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한국 네티즌이 얼마나 우수한 시민인지 KISO가 입증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KISO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황 성 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1. '한국적' 인터넷 자율규제의 출발점은?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이론적 · 실천적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나 영국, EU 등 선진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호주 등의 일부 국가에서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서구의 이론적 · 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망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존재하였다. 물론 실천적인 측면에서 혹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서구에서 개발된 자율규제시스템 혹은 적어도 한국적 자율규제시스템을 한국 사회에 착근시키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보기에 한국에서의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는 '한국적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실천적 ·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이 더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실천적 ·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들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와 비교해 볼 때 인터넷에서 주로 문제되는 정보 유형의 차이,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의 차이, 인터넷의 이념 및 본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행태 및 패턴의 차이 등을 들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몰이해, 정부영역의 역할에 대한 오해 등을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실천적 ·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서구에서 논의된 자율규제에 관한 문제의식의 발로가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라는 맥락에서 주로 성적인 관련 불법정보(예컨대 child pornography)와 청소년유해정보의 효율적 통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논의된 자율규제에 관한 문제의식의 발로는 출발은 이와 유사하였지만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명예훼손정보나 개인정보침해정보 등의 통제에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다는 점이다.[1] 따라서 자율규제시스템을 개발했던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이해하기 힘든 인터넷 환경이 아닐 수 없고, 서구에서 개발된

인터넷 자율규제시스템이 적용되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이나 ISP의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배경에 있어서도, 특히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에서의 법적 책임 논의의 기저에는 자율규제론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법적 책임 논의의 기저에는 사회적 책임론이 존재한다.[2] 즉 미국에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이념으로 전제하면서,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포털이나 ISP에 의한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설정하고,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내지 조건의 형성'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보다는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그 이념으로 전제하면서, 이러한 이념을 구체화하는 담론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책임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제도화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론을 기저로 하는 정부규제의 효율성 제고와 포털의 법적 책임의 강화라는 환경 하에서는 포털에 의한 자율규제의 유인(incentive)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정부규제에 대한 순응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고, 결국 시장영역에는 오로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무임승차자들(free rider)의 상호 눈치보기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셋째, 인터넷의 이념 및 본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한국적 특수상황이 존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폐쇄적인 기존 미디어를 '보완'하는 하나의 '공론장(public forum)'으로 기능하는 대안매체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참여, 개방 그리고 공유'의 정신은 웹 2.0이나 UCC 등의 출현으로 인하여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서구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규제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거나 담론을 주도하는 주체들은 인터넷을 이러한 대안매체로서 보기 보다는 또 하나의 '영향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무절제한 참여, 폐쇄적이고도 상호불관용의 담론형성, 사익을 위한 공유'로 점철되어 있는 '안전하지 못한(unsafe)' 공간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강화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인터넷이용자나 포털이 완전히

1)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선구적인 이론적 연구들 중 하나로 황승흠 • 황성기 • 김지연 • 최승훈,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이하부터 황승흠 외 3인(2004)로 함)를 들 수 있는데, 이 책은 주로 유럽에서 이론적?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인터넷 자율규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도 이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지만,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자율규제모델은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감히 자평하고 싶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유럽에서 제시되었던 인터넷 자율규제장치들 중 일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패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로 대표되는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훌륭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혹은 너무 이상적인 모델인 나머지 착근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을 제도화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나,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정부 주도의 제도화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무산된 적이 있다. 그 이후로는 최소한 한국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에 관한 논의는 이론적 차원에서나 실천적 차원에서나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콘텐츠 규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정보 유형의 차이로 인하여, 유럽에서 제시된 인터넷 자율규제모델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에서 제시된 인터넷 자율규제모델 중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이나 인터넷핫라인은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성적인 관련 불법정보(예컨대 child pornography)와 청소년유해정보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대상정보의 범위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명예훼손정보나 개인정보침해정보 등의 통제에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는 관계로 이러한 장치들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문제의식이나 자율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적 상황에서도 유효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우지숙,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판단에 있어서 편집권 행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7. 9, 54-77면.

자유로운 것은 전혀 아니다.

넷째, 정치적 문화 성숙도의 차이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맞물려 있다. 한국의 정치문화는 후진성 그 자체이다. 표현의 자유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한국의 정치분야일 것이다. 정치적 비판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아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재갈을 물리려고 인터넷 규제시스템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항상 '인터넷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는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터넷을 항상 정파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려는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의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노력도 항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문화의 후진성이나 표현의 자유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자율규제에 대한 불신이나 회의가 팽배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자율규제가 도입되고 착근하는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정부정역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규제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기준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규제의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것이 곧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영역과 시장영역은 합리적 · 과학적 분석과 근거에 기반해서 각각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는 시장영역에 맡겨야 할 부분까지 정부영역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영역이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실명제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시장에 맡겨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즉 인터넷 익명성에 관한 '커뮤니티의 자율성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실명제를 채택할지 여부는 시장영역에 혹은 개별 사업자들에게 맡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실명제의 채택 여부는 국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전략 내지 영업정책 중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A포털은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명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B포털은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비실명제를 채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느 포털을 이용할지는 이용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위험이나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3]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는 A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될 것이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원을 확인받고 싶지 않은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덜 안전한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는 B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형벌권을 통한 법적 규제시스템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고, 또한 B포털 자체가 개발해서 적용하는 자정메커니즘을 통해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B포털은 노력을 할 것이다.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인터넷 실명제는 규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규제의 정당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3) 물론 이 경우 '객관적'으로 안전한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보류하겠다.

지금까지 필자는 한국에서의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실천적 ·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몇 가지 진단해 보았다. 위의 것들 중에서 일부는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반면에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한국적 특수상황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전에 인터넷 자율규제의 개념이 무엇이고, 인터넷 자율규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약간의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2. 인터넷 자율규제란?

일반적으로 자율규제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영역이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4]부터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임하는 경우'[5]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이나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자율규제 개념 및 방식이 동시에 적용하거나 혹은 혼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표준(prototype)으로서의 자율규제의 개념이나 모델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규제'를 '자유방임'이 아닌,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 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6]으로 개념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자율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과 사실상 동의어로 이해될 수 있다.[7]

자율규제의 개념을 위와 같이 이해할 때, 이러한 자율규제의 개념은 무규제(non-regulation) 혹은 비규제(un-regulation)와 다르고, 또한 탈규제(de-regulation)와도 차별성을 띠게 된다. 무규제

4) 이 경우도 개별 사업자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협회 등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5) 국가가 만든 국가 주도의 콘텐츠 심의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율심의시스템을 접목시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소년보호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라고 할 것이다.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매체물의 제작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은 매체물의 제작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매체물의 제작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심의 • 등급분류권한을 갖고 있는 각주의 청소년업무 담당장관은 주간협정(Staatsvertrg)에 의해 이 업무를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승인한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그 이유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즉 외형은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 심의업무의 수행은 영화산업계에 의해 설립된 자율규제기구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985년 주들은 『영화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정(Vereinbarung uber die Freigabe und Kennzeichnung von Filmen, Videokassetten und vergleichbaren Bildtragern)』을 체결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심의 및 등급분류에 있어서 전문적인 관정기관으로서의 '영화산업 및 청소년심사기관의 자율규제위원회(die Ausschusse der Freiwilligen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Jugendprufstelle: FSK/J)'의 심의를 원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동 협정 제1조). 즉 각주의 청소년관청은 위 자율규제기구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자신의 결정으로 공고하는 것이다. 물론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심의라 할지라도 외형은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심의신청을 기각하거나 불리한 등급을 부여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허용된다.

6) 황승흠 외 3인(2004), 7-8면.

7) 황승흠,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11, 265면.

혹은 비규제가 국가로부터의 회피, 국가와의 대결, 국가 개입의 반대를 의미하거나, 탈규제가 과도하거나 혹은 시장을 약화시키는 공적 규제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필자가 여기서 원용하고 있는 자율규제는 국가와의 대결을 지향하여나 국가 개입의 철저한 반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공적 규제시스템을 거의 해체의 수준까지 완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8] 오히려 필자가 원용하고 있는 자율규제는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행위자를 바꾸거나 최소한 민간영역이 정부영역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규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자율규제의 개념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자율규제의 정부적 성격(governmental nature of self-regulation)이 자율규제의 핵심적 속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9]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KISO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자율규제의 개념은 여전히 정부영역의 후견주의적 간섭의 전통이 강하고 '자유와 책임의 조화'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그리고 자율규제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지배적인 한국적 환경에서는 일종의 표준으로서 혹은 과도기적 실험으로서 적절할 수 있다고 본다.

3. 자율규제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10]

자율규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제의 내용과 기능을 결정하거나 자율규제시스템의 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 문제를 다루기 전에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간의 관계문제다. 분명한 것은 자율규제가 정부규제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더라도, 인터넷에 대한 법적 · 공적 규제시스템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안전, 공동체 구성원의 권익 보호,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가치의 존중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공의 안녕과 사회적 안전이 염려되는 경우, 정부는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정부의 고유한 역할을 자율규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의 완전 대체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인터넷의 불법 · 유해콘텐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 규제환경에서, 콘텐츠 규제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자율규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인터넷 자율규제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대신 자율규제의 토대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① 조정과 지원

자율규제(=공동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정부의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시민사회의 자율규제 역량의 강화 및 자율규제 기반의 조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조정한다(사회적 합의의 조정자). 둘째,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한다(정책 설계자). 셋째, 당해 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지

8) 물론 기존의 공적 규제시스템이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것도 자율규제모델이 추구하는 지향점 중의 하나 혹은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토대마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9) 황승흠 외 3인(2004), 7-8면.
10) 황승흠 외 3인(2004), 194-196면.

원 및 감독을 수행한다(지원자 내지 감독자).[11]

② 규제기관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보장

자율규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12]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규제권한의 융통성 있고 신중한 행사가 필요하다.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권한의 발동이 융통성 있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 운영의 경직성이 인터넷사업자에게 위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자율규제를 통해서 규율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의 경직성이 인터넷 정보 유통에 악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예가, 2005년 상반기, 네이버(naver), 다음(daum), 네이트(nate), 야후(yahoo)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18세 관람가의 성인용 VOD(Video on Demand)의 음란성과 관련하여, 검찰이 VOD를 제작한 자와 그리고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VOD를 포털사이트 이용자에게 서비스한 포털사이트의 대표 및 실무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례이다. 2005년도에 검찰이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VOD 서비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정보유통죄를 적용하여 수사 및 기소한 이후,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성인용 VOD 서비스 자체를 완전히 중단시켜 버렸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인들이 성인용 V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완전히 봉쇄된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인용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기반 자체가 없어진 셈이다.

③ 자율규제의 법적 보장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나 자율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집행의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곧바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점은 바로 자율규제의 한계로서도 작용한다. 결국 자율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자율규제나 콘텐츠에 대한 자율심의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자율규제나 자율심의에 대한 면책조항을 입법화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에서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관련하여, 주로 자율규제의 법적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에서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

1. 기본적인 전제조건

(1) 면책조항의 입법화

현재 인터넷 자율규제를 시도하기 위해 7개 포털사가 주체가 된 KISO가 설립되어 있다. KISO의 주된 임무는 포털이 매개하는 게시물에 관한 정책

11 정책집행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서, 흔히 예산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인터넷 환경, 특히 포털시장에 있어서 사업자들 간의 시장점유율의 불균형, 인터넷사업자들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면 물론 국가에 의한 예산지원이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지원을 빌미로 자율규제기구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율규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에 의한 예산지원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12 여기서 규제기관이란 검찰 등의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법집행기관 및 정책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각종 심의기관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포털 매개 게시물과 관련한 정책기준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첫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권리침해정보이다.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시스템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조치제도이다.

둘째, 음란정보 등의 불법정보이다. 불법정보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시스템이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이다.

셋째, 청소년유해정보이다.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시스템은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제도이다.

넷째, 저작권침해정보이다. 저작권침해정보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시스템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Notice & Take Down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유형의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적·공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법제도의 정립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자율규제조치를 하면 법적 책임이 면책된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자율규제에 대한 면책조항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책조항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콘텐츠의 '유통'에서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통제'에서 비롯되는 법적 부담(legal risk)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업자도 자율규제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면책조항은 자율규제에 있어서 하나의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포털의 사회적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강화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

우선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임시조치제도의 경우, 면책조항이 없으면 포털의 경우에는 그 매개적 기능으로 인하여 정보게시자든 피해자든 어느 쪽으로부터도 법적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3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6항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만 '임의적 책임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임의의 임시조치제도의 경우에는 임의적 책임감면 조항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보다 '일반적인 필요적 책임면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상의 Notice & Take Down제도를 임시조치제도에 수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불법정보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내지 자율심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면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축효과를 막기 위하여,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에 '쌍방향컴퓨터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의 제공자는 다른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출판인 혹은 발화자(publisher or speaker)'로 취급되지 아니한다는 것과 쌍방향컴퓨터서비스 제공자가 선의의 자발적 조치로 음란정보 등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 자발적 차단조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착한 사마리안 조항'[13]을 둔 것은 참고할 만하다.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2조의 자율규제조항의 경우, 인터넷사업자가 일정한 콘텐츠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판단하면,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도 법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유

해매체물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어떤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는 어떤 법적 면책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차피 사후심의를 통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자는 스스로 심의해야 할 어떠한 동기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사업자의 판단에 대해서 법적 효과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만 이 조항이 자율규제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14]

(2)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간의 경계의 명확화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적 · 공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는 두 번째 전제조건은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자율규제가 실시되는 경우에 기존의 정부규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이중적 또는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사업자는 이전보다 오히려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15] 특히 각 매체별로 별도의 규제기관 내지 심의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 주도의 심의 및 등급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계의 명확한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의 명확한 설정은 위에서 언급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던 규제기관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간의 경계의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부영역의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콘텐츠 심의기능의 범위나 역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현재의 한국적 상황상 법개정을 통한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심의기구 간의 MOU체결을 통해서 역할분담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 자율규제의 절차와 방법의 구체적인 제시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규제의 방법과 절차, 실행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율규제의 방법과 절차, 실행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떠한 수준에서 그리고 어떠한 수단을 매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델이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개별 콘텐츠별로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규제의 방법, 절차, 실행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명예훼손정보의 경우 자율규제가 가미된 임시조치제도라든지, 저작권침해정보의 경우 저작권법

13) 47 U.S.C. §230(c). 구체적인 원문은 다음과 같다.
(c) Protection for "Good Samaritan"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1) Treatment of publisher or speaker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2) Civil liability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held liable on account of –
(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the provider or user considers to be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excessively violent, harassing, or otherwise objectionable, whether or not such material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or
(B) any action taken to enable or make available to information content providers or others the technical means to restrict access to material described in paragraph (1).

14) 황승흠(2008), 284면.
15) 황승흠(2008), 281면.

이 규정하고 있는 Notice & Take Down제도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에 사업자의 자율규범으로서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정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을 통한 자율규제의 효율성 담보를 위해서, 행동강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법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행동규약의 근거와 기준을 국가법이 제시하고,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사업자들이 정하여 이를 준수하며, 국가법에서 자율규제 준수에 따른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모델이 가능한 것이다.[16]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4가 '자율규제'라는 제명하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막연할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을 통한 자율규제에 대한 보완적 장치들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서 그 자체로 실효성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임시조치 등 권리침해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1) 현행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

현재 포털 및 KISO가 그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본래취지와는 달리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시조치제도이다. 임시조치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면 포털은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삭제 또는 30일 이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제도는 2000년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이미 도입되어 있던 '피해자의 삭제 · 반박문게재요청제도'에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소위 '사이버 가처분제도'를 법률차원에서 수용함과 동시에 가미한 것이다.

임시조치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정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자 권리의 신속한 구제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도모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해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조치제도는 최근 '권리침해정보 규제시스템'으로 불리어지고 있기도 한다. 임시조치제도야말로 포털 규제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슈이다. 왜냐하면 '피해자 – 포털 – 가해자(정보게시자)'라고 하는 또 다른 '삼각구도' 하에서, 포털이 문제되는 정보 유통의 게이트키핑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임시조치제도를 통한 포털 규제는 이러한 게이트키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으로 정보 유통이 통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시조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임시조치제도가 '피해자에 의한 남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v.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로운 균형이라고 하는 기본취지가 몰각된 채,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나 정부권력, 사회적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 내지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

16) 황승흠(2008), 281면.

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간부의 사진과 관련된 사례,[17]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의 발언사례,[18]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과 과련된 사례,[19] 2008년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동생과 관련된 기사 및 동영상과 관련된 사례[20]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명예훼손인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권은 법원이 갖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명예훼손의 '주장' 만 있을 뿐이다. 다만 피해자의 권리의 신속한 구제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잠정적' 으로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임시조치제도는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및 재게시요청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많다. 포털들이 내부적으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및 재게시요청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의 내부정책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는 임시조치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부담을 개별 포털사업자가 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선책으로 임시조치제도의 남용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단순한 주장만 있다고 해서 임시조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국한해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조치를 해주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털사업자가 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게 되고, 실제로 명예훼손의 특성상 그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결국 포털사업자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와 같이 임시조치를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개선방안

첫째,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절차 및 재게시요청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나 재게시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원래의 정보를 재게시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공적 심의기관으로 회부시키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임시조치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부담을 개별 포털사업자가 안게 되는 문제점도 동시에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해자의 임시조치요청에 따른 임시조치와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게시 과정에 있어서 매개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규정하는 조항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독립적인 공적 심의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기능을 수행할 공적 심의기관은 그 설치나 구성, 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3의 공적 심의기관 이외에 제3의 자율심의기관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예컨대 KISO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17) 2009년 5월 1일 노동절 시위 현장에서 지하철 입구를 막고 시민들에게 장봉을 휘두르는 경찰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었는데, 당사자인 서울경찰 모 간부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여 해당 사진을 담은 게시물 다수가 임시조치되었던 사례이다.

18) 2009년 4월 장자연리스트와 관련한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모 유력일간지에 의한 임시조치요청으로 인해 포털에서 초기 대량으로 임시조치되었던 사례이다.

19) 2008년 12월 최병성 목사('생명과 평화' 블로거 운영자)가 포털에 게재한 '1000마리 철새 떼죽음 된 시화호 원인 조사해보니' 등 게시물 17개가 양회협회의 '명예훼손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 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던 사례이다.

20) 2008년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동생이 부산에서 성매매와 상관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와 이와 관련된 동영상이 경찰청의 요청으로 초기 대량으로 임시조치되었던 사례이다.

있다. 물론 이러한 민간영역에서의 자율심의기관이 당장 제3의 공적 심의기관을 '완전히 대체' 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공적 심의기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3의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결과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유인해 낼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심의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심의 업무의 과중을 덜어주는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프로세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게시자에 의한 정보의 게시 →② 피해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임시조치의 요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지체 없는 필요한 임시조조치(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당해 정보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제됨) →④ 피해자 및 정보게시자에 대한 즉각적인 통지 →⑤ 정보게시자가 이의제기 및 재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정보게시자가 공적 심의기관 또는 자율심의기관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그 재게시를 요청하는 경우 포함) 피해자에게 재게시요청사실 및 재게시예정일의 즉각적인 통지 →⑥ 재게시예정일에 당해 정보의 재게시(재게시조치를 취한 경우 당해 정보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제됨) →⑦ 공적 심의기관 혹은 자율심의기관에의 회부 및 분쟁조정절차 개시

첫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만 충실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에 대한 개별 사업자의 실체적 판단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및 재게시요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임시조치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공적 심의시스템과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심의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자율규제역량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인터넷 자율규제, 특히 정보매개자인 포털을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의 또 다른 예로서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는 전형적으로 사법기관에 의한 규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권은 법원이 갖고 있으므로,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첫째,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이 당해 불법정보를 매개한 포털에 대한 규제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시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이용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자체는 포털 규제와 관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은 2002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21]을 받았던 불온통신제도가 그 범위를 불법정보로 설정한 상태로 존치한 것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불온통신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이용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그러한 정보를 매개한 포털에 대한 규제시스템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이 법원에 의한 규제시스템 이외에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시스

21)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템을 주된 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2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명령권제도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23], 동법시행령 제8조[24]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제도이다. 사법부에 의한 종국적인 불법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정보유통의 차단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하고 타당하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적 규제시스템의 일환 내지 연장선상에서 자율규제를 적용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행정적 규제시스템도 결국 그 적용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를 전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에 자율규제를 가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자율규제 내지 자율심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건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자율규제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정부규제의 경계를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정부규제의 경계선의 설정 이전에 그 대상범위의 '외연'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범위는 너무 넓다. 불법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부규제든 자율규제든 혹은 공동규제이든 '규제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의 정당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따라서 그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불법정보의 범위는 2002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것으로서 국가나 정부에 의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정보의 범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나 정부에 의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정보의 범위를 '내용 그 자

22)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3)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24)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에 국한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생각건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국가적 ·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예컨대 명예훼손 관련 정보, 혹은 사적 주체간의 분쟁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보다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등 절차적 분쟁해결프로세스에서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좁히더라도,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제44조의 7 제1항 제8호)는 너무 포괄적이고, 제44조의 7 제1항 제9호도 해석을 통해서 불법정보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범위를 국가적 ·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좁힐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두 담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정보 중 음란정보에 대한 심의는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의 한국적 상황상 매우 민감한 정보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정보만을 심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임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율규제기구의 판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하는 법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위임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법적으로 보장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자율규제기구 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임의의 임시조치의 대상을 불법정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임의의 임시조치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등 절차적 분쟁해결프로세스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임의의 임시조치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불법정보 중에서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정보는 판단의 어려움이나 민감성 등의 성격을 감안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공적 규제 시스템의 영역에 남기고, 음란정보에 대해서만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음란정보에 대한 심의를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하는 것과 맞물려서, 음란정보에 대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면책조항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임의의 임시조치의 대상을 음란정보에 국한시키고, 또한 음란정보 등 일정한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자율규제기구가 담당하는 경우, 불법정보에 있어서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적 전제조건으로서 자율규제에 대한 면책리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사업자 차원에서의 임의의 임시조치 내지 자율규제,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심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 면책조항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은 전적으로 공적 규제시스템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이다. 일정한 콘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차적

인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담당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 · 결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청소년에 대한 유통금지, 포장의무, 연령확인의무, 구분 및 격리의무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2조가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라는 제명하에 매체물의 제작 ·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청소년유해성 여부 판단에 대한 면책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는 어떤 법적 면책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공적 심의기관 주도의 심의보다는 사업자 또는 KISO 등 자율규제기구 주도의 심의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권한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는 적극적 심의에서 사후 확인적 · 소극적 심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개별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를 기본축으로 하면서, KISO 등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사후심의'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확인적 사후심의'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의 방식을 띠게 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는 이미 청소년보호법 제12조에 의해 입법화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적극적 심의를 소극적 · 확인적 사후심의로 전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 KISO 등 자율규제기구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① 개별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 → ② KISO 등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사후심의 → ③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확인적 사후심의

둘째, 위와 같은 자율규제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 및 KISO 등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사후심의에 대해서 면책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책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 및 KISO 등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사후심의에 의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된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콘텐츠를 제작 · 게시한 자에 의한 이의제기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확인적 사후심의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되었을 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 · 매개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상의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한다.

5.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의 마련

필자는 지금까지 권리침해정보 규제시스템, 불법정보 규제시스템,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심의를 공적 규제시스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물론 개별적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 정보의 청소년유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업자가 할 수 있으나, 심의의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을 확

보한다는 차원에서 자율규제기구가 그 판단을 대행할 수 있고 대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공적 심의기관과의 합의나 MOU체결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자율규제 및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기구의 권한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에 있어서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 및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에서 콘텐츠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6.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관계 – 경쟁적 · 보완적 관계

자율규제기구는 공적 심의기관과의 관계에서 경쟁적 ·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적 · 보완적 관계가 과연 현재와 같은 국가 주도의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경쟁적 · 보완적 관계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의 국가 주도의 규제시스템이 국가에 의한 억압적 · 행정편의적 규제시스템이라는 비판, 혹은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어느 정도 희석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자율규제가 정부규제의 보완책으로 개발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속성상 정부규제가 규제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정당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둘째, 공적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기구와의 경쟁적 · 보완적 관계가 필요하다. 공적 규제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은 자신의 권한행사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 간의 갈등이 매우 첨예한 영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영역에서 공적 심의기관은 그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정부영역으로부터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자율규제기구가 개별 사업자들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 심의기관이나 자율규제기구가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콘텐츠 규제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가 상호 경쟁적 ·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서로가 자신이 운영하는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나오는 말: KISO는 성공할 수 있을까?

KISO는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그 이념으로 세워진 자율규제기구이다. 물론 개별 사업영역이나 시장영역에서 자율규제를 위한 기구나 단체가 많겠지만, 인터넷 콘텐츠의 처리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그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구는 KISO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는 그 간의 정부 주도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가 그 '정당성' 혹은 '효율성'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인터넷 콘텐츠 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KISO의 설립 그 자체는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한 출발점이지, 종착역은 결코 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은 사실 현재의 수준에서는 걸음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KISO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정부영역과 시장영역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터넷 영역에서 자신의 고유하고도 적합한 역할에 맞게 행위한다면, KISO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KISO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의 전제조건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화는 정부영역의 몫이라 생각한다. 특히 현재의 한국은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영역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KISO

종합토론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I. 규제 논의 전반과 관련한 이슈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는 법적인 틀 안에서의 공적 규제와 함께 공동규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전제에 대한 동의가 규제 주체 간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준호, 심재웅 두 연구자와 함께 수행한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바람직한 협력방안 모색' 이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과제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보려 한다.

1.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대립적 시각을 탈피

이는 규제 논의의 균형성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콘텐츠의 영향력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입법 과정을 통한 공적규제를 지향하는 입장과 인터넷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사업자와 인터넷 이용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행되어 왔다. 2008년 진행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강화, 사이버 모욕죄의 추진 등은 자율규제의 역량에 대한 평가나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와의 사회적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공적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적' 으로 실시된 많은 연구들은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와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EU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규제방식에 대한 해법이 주로 법적인 공적규제의 필요성 보다는 자율규제의 효율성 강화방안의 모색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문제는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일련의 연구들의 논점이 규제 당국이 개입하는 공적규제와 인터넷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의 활성화의 균형을 강조하기 보다는 인터넷 자율규제의 상대적 중요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규제를 자율규제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해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콘텐츠 규제 시스템의 변화에 관한 논의에서 자율규제가 공적규제보다 더 좋은 방식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을 자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규제가 모든 인터넷사업자에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재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역시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를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적 논의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포탈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노력에 대한 평가와 공적 규제의 제약에 대한 투명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행정기관과 인터넷사업자의 상호간의 신뢰회복이 중요

신뢰와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문제다. 새로 출범한 자율규제기구와 규제당국과의 인터넷 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적 협력에 대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공식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자율규제에 기반한 접근과 법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한 공적 규제의 접근은 접점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 규제의 최종 판단자가 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측과 법적인 제도 속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당국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그리고 이들 주체간의 신뢰의 부재는 인터넷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국내 인터넷 규제 시스템 변화 논의를 답보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는 공적규제에 대항하기 위한 기구 마련이 아닌 자율규제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규제를 우선적으로 축소하고 자율규제에 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탈피하고 자율규제의 성장을 통해 공적규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적규제를 강조하여 다양한 입법 청원을 하는 측 역시 공적규제만으로 인터넷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자율규제에서 찾을 필요를 인정해야 한다. 특히 합의할 수 있는 조건에 만족하는 인터넷사업자의 경우 공적규제 기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자율규제 쪽으로 단계적으로 그 역할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규제자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를 권력의 축소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3. 현존 규제 시스템에서 출발하여 변화를 모색

인터넷 콘텐츠 규제 영역에서 정부와 연결된 행정기구 또는 공적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인터넷 자율규제기구가 출범한 이후 제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자율규제의 성장 과정에 부합하는 공동규제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규제 시스템 전반에서 현재의 정부 주도의 공적규제의 주도권은 일단 인정하면서 세부적인 규제과정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단계적' 으로 규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자율규제 영역의 이슈

현재 일부 포털미디어의 자율규제의 수준은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한계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자율규제 영역이 공동규제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제한점이 있다.

1. 정책적 우선순위와 재원 투자의 문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은 정책적 중요도에서 시장의 상황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경우가 많았다.

2. 기업 역량과 기업의 문화 문제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는 기업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편차

는 공동규제의 파트너로서 인터넷사업자가 자율규제 영역에 참여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3. 이용자와의 갈등 해소 시 공적규제의 편이성의 문제

민간 영역의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이를 공적규제로 넘기는 것은 자율규제의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

4. 사적 검열에 대한 압력 문제

대형 포털미디어의 경우 이미 자체적인 심의, 필터링,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의 시스템이 이미 잘 정착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사적 검열에 대한 압력 때문에 투명하게 제대로 책무 수행과정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노력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자율규제의 노력이 있음에도 이를 정책 입안자와 인터넷의 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면서 공동규제의 논의에서 큰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

III. 규제 주체별 수행계획과 공동의 협력지점 모색

1차적으로 자율규제 영역에 제한적인 위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테스크포스팀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각 주체별 점검사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본인을 포함한 연구팀은 공동규제를 위한 단계적 TSE (trigger-stabilization-evolution)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양승찬, 도준호, 심재웅, 2009 출간예정). 그 중 1단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은 주체별로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사업자

행동강령에 대한 재점검, 자율규제 기구 행동강령의 세분화, 인터넷 사업자간 협조체제 공조, 안정적인 재정구조 확보, 이용자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위임받은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동규제의 파트너로 인터넷사업자를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자율규제의 지원자와 공동규제의 촉진자의 입장에서 마련한다. 인터넷사업자가 행동규약을 제정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점검하고 일단 승인한 것에는 자율권과 면책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제한적 위임과 점검, 행동강령을 승인받지 않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기존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준수와 위반에 대해 인센티브와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3. 협력지점

행동강령에 대한 협의, 효율적인 핫라인 설치, 심의판단 결과의 공유, 상시적인 대화 창구의 운영, 인터넷 리터러시의 활성화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리터러시 분야와 같은 협의가 쉬운 사항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KISO는 향후 무엇을 해야하는가?

자율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KISO의 출범은 의미가 있고 향후 이 기구의 진화에 대해 공동규제의 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KISO의 활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모색, 대표성과 역량강화, 정부규제와의 협력, 개방적 거버넌스 구조의 채택, 안정적 재원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권헌영 교수님의 지적에 동의한다.

정책기구에서 실질적인 민간 자율규제 기구가 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정책보고서 두 편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민간영역에서 담당

할 수 있는 첫 번째 역할은 오히려 유해, 불법 정보에 대한 자체적인 심의의 체계화로 이 영역의 심의를 주도할 수 있게 위임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 법적규제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한 것이 공동규제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 포지셔닝에 아쉬움이 있다. KISO가 법적규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기구인가 아니면 공동규제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자율규제기구의 위상을 갖출 것인가? 공동규제의 틀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KISO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가 향 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 속에서 신뢰가 마련될 것이고 이러한 단계를 통해 자율규제 영역으로 규제 방식이 위임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한국에서는 작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터넷 규제가 시도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설립되면서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성을 띄면서 진행되고 있다. KISO 주최로 열린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에 관한 세미나는 작년 미디어법의 통과이후 새로운 규제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규제논의에 대해 그 의미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권헌영교수와 황성기교수의 논문은 한국에서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및 KISO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규제는 법적 또는 정부규제보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한 규제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표자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주요 행위자가 정부와 관련 협회 및 인터넷기업들 그리고 일반이용자라고 할 때 자율규제의 논의가 정부와 관련 협회 및 기업의 협의로만 진행된다면 진정한 자율규제의 의미를 가질수 없다. 권헌영 교수도 발제문에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이용자가 자율규제 방식으로 행해지는 인터넷규제를 이해하고 동의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자율규제는 단순히 정부와 기업의 협의규제에 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권리포럼의 경우 주요 구성원은 70여개 회원 ISP, 전문가 · 협회 ·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이용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는 일부 사업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용자인 개인까지 감안하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들에서도 일반이용자의 이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마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율규제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서는 안되며, 누구나 찬성할 수 있는 공동목표와 수단 그리고 실천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헌장"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마련하고 이에 입각하여 구체적 행동강령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협회 및 사업자만이 아니라 이용자 수준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율헌장"과 같이 참여자가 모두 공유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 자율정책기구나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행메뉴얼로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고 또 다양한 사례를 모은 사례집등의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국면에서 활용가능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실행메뉴얼, 사례집에 더불어 상담센터, 불법

유해정보접수창구, 자율규제를 위한 연구그룹 결성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엄 열 (방송통신위 네트워크윤리팀장)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 논의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는 폭발적인 한국 인터넷 이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이루어지는 정책적 고민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춰지게 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 곧 한국의 같은 규제 필요성과 이의 합리적 수립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한국에서 논의 되었던 많은 노력들이 결국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 권리보호라는 두 가지 인류 기본적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었음이 이해되게 될 것이다.

규제의 방법, 정도 등 실제 규제체계 확립과 실행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사회 순기능적 역할을 해치지 않는 균형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는 바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규제의 실질적,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규제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첫째, 인터넷 규제는 일관적이고 균형적인 규제철학에 기반하여야 한다. 특정 시점, 특정 이해관계 등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균형적 시선을 유지하며 일관적인 규제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이용자는 자유롭게, 범법자는 엄격하게' 원칙을 확립하여야 된다. 모든 규제는 사회적 학습효과를 제공, 범법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선의의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과 사회적 효용을 배가시킴은 당연한 이치다. 셋째, 인터넷 시장과 산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장을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향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는 이용자 보호 측면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기업의 자율규제를 이끌어내야 한다. 인터넷 산업 발전 초기 한국은 워낙 드라마틱한 시장 성장을 이루어왔고 인터넷 역기능도 단시간에 강렬히 경험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도 낯설고 인식도 늦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세계에서 누구도, 특히 사업자들은 규제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성숙단계에 들어섰으므로 법적 규제와 더불어 기업의 자율규제를 통해 인터넷 상의 문제점을 1차적으로 자체 공간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병선 (Daum 기업커뮤니케이션 본부장)

1. 인터넷의 속성에 대한 이해 필요

자율규제나 공적규제를 논할 때 먼저 인터넷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매스미디어 시대와 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달리한다. 매스미디어 시대 이전의 원시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식이나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사회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이를 전담하는 매스미디어가 탄생했다. 그런데 인터넷의 등장은 매스미디어 시대 이전처럼 사람들간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만들었다.

최근 인터넷 서비스의 트렌드가 '트위터'와 같이 옆에서 속삭이는, 혹은 귀엣말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성공

한 서비스들을 보면 어김없이 이런 인터넷의 속성을 잘 살린 것들이다.

기존 매스미디어 시대의 문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 것이다. 서비스 트렌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기존 매스미디어를 다뤘던 것과 똑 같은 논리로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데서 갈등이 벌어진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상상력을 구현한 서비스의 발전은 규제당국에 기존의 문법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계속 던질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논할 때 과연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는 실효성이 있는지를 우선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질서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2. KISO출범에 대해

발표와 토론 중에 KISO에 대해 또 다른 이용자 통제수단일 수 있다거나, 당면한 기업의 애로점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 아니냐 라는 등의 의심 어린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KISO 창립작업에 처음부터 관여했고, 지금도 정책위원으로서 한 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KISO의 창립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인터넷서비스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현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사실 창업 정신이나 정책, 정서가 다른 7개 포털사가 공동의 규율을 정해 자율규제를 시도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인터넷의 정신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봐주면 좋겠다.

3.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역할분담

자율규제가 공적규제보다 좋다거나, 우월하다는 식의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며, 지금까지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았다.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관계는 역시 적절한 역할분담이어야 한다고 본다.

자율규제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은 KISO가 최선을 다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규제기관은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KISO에게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될 수 있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면 참여한 회원사에게 법적인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인터넷사업자들이 스스로 참여해 자연스럽게 자율규제가 자리 잡을 것이다.

시민참여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용자 참여에 대해서는 KISO 설립 초기부터 논의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다.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기타의견

기타 의견으로는 녹색소비자연대 전흥휘 정책위원이 "서비스 이용 약관에 의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인정하나, 실제 규제를 당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것이 현실적이다. 규제 방침에 대해서는 이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명호 팀장은 "온 ·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영향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방통심의위원회와 KISO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 방통심의위원회도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www.kiso.or.kr

미국의 인터넷자율규제 구조와 최신 프라이버시 이슈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미국의 인터넷자율규제 구조와 최신 프라이버시 이슈

황 용 석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미국 인터넷자율규제의 메커니즘

최소규제 원칙 속에 자율규제 진작

미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핵심 근간은 수정헌법 제1조, 즉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지 못한다"는 명문에 기반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국가기구가 직접 콘텐츠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으며 법안을 만들 때 그 것이 헌법적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인터넷에 대한 최소규제모델을 유지하고 있으며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나 심의 제도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이것이 무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전제 아래에서 상거래 및 표현행위에 대해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체계가 작동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인 ISP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령 및 규제기구가 연관되어 있다. 이들 법령이 만들어지고 작동되는 방식을 보면, 인터넷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ISP의 면책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의 인터넷 특히, ISP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제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분산적인 구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방차원에서는 기존의 연방기구들이 기능의 연장 차원에서 인터넷을 분야별로 관장하고 있다.

먼저, 연방부처 산하 기구로는 정보통신 기술정책, 통신상품의 질과 가격정책, 그리고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다루는 미국 상무성 산하의 '정보통신국(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하 NTIA)' 이 있다. 위해적인 식의약품의 인터넷 유통을 규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의 식품약품의약국(Federal Food Drug Administration: FDA)이

규제한다.

부처가 아닌 독립기구로는 주파수 허가, 보편적 접근 정책 등 통신과 방송정책을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있다. 인터넷 및 연관 사업자들간의 공정거래 정책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ttee)가 맡고 있다. 인터넷 상의 안전거래 정책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담당한다.

이처럼 미국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연방부처 및 독립위원회가 기능연장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ISP와 관련된 규제 법규는 일반법(common law)와 주법(state law)에 기반해 있다. ISP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방법령은, 포르노그라피,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통신법 제5장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CDA) 230(c)(1)' 이 대표적이다.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이 있으며,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ECPA)' 이 해당된다.

입법 수단과 목적으로서 자율규제의 진작

미국 법안의 입법 목적을 살펴보면, 그 근간에는 규제의 사단으로서 행위 주체의 의한 자율규제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주도해서 1998년에 입법화하고 2000년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온라인을 통해 13세 이하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웹 사이트 운영자는 증명할 수 있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verifiable parental consen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Szoka & Thierer, 2009).

중요한 점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 법안을 만들 때부터,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피난처란 의미로 일종의 면책요건을 의미한다)"를 설계해서 업계의 자율 규제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기업집단 등이 위원회에 법률적 근거에 부합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승인을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승인 받아 운영하는 웹 사이트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법률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을 적용 받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그 동안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모두 4건의 사례(TRUSTe, ESRB, CARU 그리고 Privo 등)에서 ISP를 구제한 바 있다.[1)]

반면, 연방거래위원회는 성인용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어린이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이 명시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이 법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성인용 소셜네트워킹사이트인 Xing.com을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다. 어린이의 온라인 프라

1)연방거래위원회(FTC)의 COPPA의 세이프 하버 조항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tc.gov/privacy/privacyinitiatives/childrens_shp.html)

이버시 보호법이 제시한 법률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그 결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06년 1백만 불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금액은 전례가 없이 큰 것이다. 2008년에는 Imbee.com에게 13만 불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율규제정책에서 벗어난 대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입법 목적에 자율규제의 진작을 전제로 한 또 다른 사례는 통신품위법 230(c)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제3자가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ISP의 책무범위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법안의 하나이다. 1996년 James Exon 상원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비방행위와 같은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어 발의했다. 당시 미 연방의회 보고서는 통신품위법에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과 ISP가 법률적 책무의 두려움 없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회는 연방법률이 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이라도 강력히 제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미의회의 중요한 입법 목적이었다(Cannon, 1996)

이러한 의도를 반영해서 당시 미의회는 통신품위법을 "위법적인 내용물을 차단하고 거른 선한 사마리아인을 위한 보호법안(protection for the 'good Samaritan'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통신품위법의 내용은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제3의 정보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어떤 정보에 관하여도 그 정보의 발행인(publisher) 또는 발언자(speeker)로서 취급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선한 의지로서 웹 사이트의 게시물들을 자율규제한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배경은 ISP에게 콘텐츠에 대한 선별책임을 묻는다면 서비스제공자가 유통되는 콘텐츠의 양과 종류를 스스로 제한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ISP가 스스로 유해한 콘텐츠를 선별하고 편집하는 경우에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서비스제공자는 자율 규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보장과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다

이후, Zeran 대 AOL의 판결[2]에서 연방법원이 통신품위법(CDA)의 230(c)를 근거로 AOL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서 발행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배포자(distributer)로서의 책임도 묻지 않음으로써 '과대한 면책'(broad immunity)논쟁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많은 논문에서 소개된 바 있어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지 않겠다.

이후 미국 법원은 이러한 면책 기조를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 ISP에 대한 역할모델을 수정하는 판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별도의 지면을 통해 소개하겠다.

미국 인터넷규제의 작동 메커니즘

2) 미국 최대의 인터넷 업체인 AOL의 전자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Zeran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오클라호마 연방빌딩 폭파사건을 미화하는 내용의 옷을 광고하고, 판매하기 위해 수일 동안 글을 올린 것에 대해 Zeran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항의와 협박을 받게 되자, AOL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AOL은 관련 글을 삭제하고, 온라인 계정을 폐쇄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AOL의 조치 이후에도 Zeran에 대한 항의와 협박이 지속되자, 결국 AOL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통신품위법에 근거해 AOL 명예훼손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모두 면책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무튼, 미국의 인터넷규제의 근간에는 표현 영역에 대한 국가의 최소개입을 근간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정신이 깔려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확대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입법과정에서 여러 행위주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승인된 자율규제 정책을 만드는 사업자에게는 면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만들고 있다.

2.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이슈의 부상

ISP의 진화와 새로운 정책과제 등장

인터넷서비스의 진화와 더불어 ISP의 개념 역시 확장되고 변형되고 있다. 초창기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던 AOL과 같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서 구글이나 야후와 같은 검색 매개 사업자, 그리고 최근에는 Twitter, MySpace.com과 같은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까지 그 유형이 다양화 되었다.

인터넷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존에 받아들여지던 ISP에 대한 법적 책무(Liability)의 범위를 새롭게 해석하는 판례나 논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법령의 개정 논의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대표적인 인터넷서비스로 자리잡으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소송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와 소송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비방과 희롱행위이며, 둘째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셋째는 개인의 이메일주소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뿌리거나 스팸행위를 하는 것, 넷째, 온라인 환경 밖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기, 정체성 도용 등이며, 다섯째는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시큐러티를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은 인터넷규제를 둘러싼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는 첫째, 새로운 현상들은 ISP의 법적 책임을 둘러 싸고 벌어지는 기존 법규에 대한 해석 논쟁, 둘째, 문제해결의 방식으로서 사업자들의 자율조치와 자율규제를 진작하기 위한 환경마련, 셋째, 가이드라인이나 법규를 통해 위법적 행위에 대한 정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웹2.0 환경에서 새로운 규제 이슈 등장

가. 타겟 광고에 대한 FTC의 가이드라인 제정

앞에서 미국의 인터넷규제의 작동 축으로서 입법목적과 자율규제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현재 진행중인 규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미국의 인터넷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는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타겟광고, 구전효과를 이용한 마케팅 등 웹2.0 환경에서 더 강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미국 인터넷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 타겟광고 또는 맞춤형 광고(target-ad), 구전 마케팅 또는 온라인 행동마케팅(online behavioral marketing) 등이 프라이버시 문제와 연결되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자체 보고서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에 발표하고, 9월에 다시 수정해서 공표했다(FTC, 2009.2). 이 가이드라인의 초점은 이용자의 행동데이터(쇼핑이나 정보 이용정보) 등

을 바탕으로 ISP나 모바일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고지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있다. 또한 보다 안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 보고서의 결론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업계가 스스로 모니터링과 불만처리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FTC, 2009.2).

한편, 미국의 광고, 소매, 마케팅, 뱅킹 등 미국의 11개 상업적 거래와 관련한 협회들이 공동회합을 열고 연방거래위원회의 가이드 발표에 따른 자율규제 정책을 논의했으며, 일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Information Week, 2009.09.23).

야후나 구글 등 선두 포털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ISP들 역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자율적 프라이버시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Bloombloom News, 2009. 6.19). 야후의 프라이버시 담당 책임자인 Anne Toth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하원 청문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기술을 적용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사의 공공정책 블로그에 타겟광고와 관련한 자사의 원칙과 정책을 공표했다(Google Public Policy Blog, 2009. 10.15).

나. 텍사스 주, 온라인 희롱법 마련

주 차원에서도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최근 텍사스 주의회는 온라인희롱법(Online Harassment Law)을 지난 9월에 발효시켰다. 이 법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등에 상업적 글을 쓰거나, 메일이나 메신저, 기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동의 없이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내용을 전송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도 ISP나 그 종사자가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텍사스주의 온라인희롱법은 MySpace.com과 같은 상업 소셜네트워킹 사이트가 대중적으로 이용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 안에 상업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를 정의 내리고 있다.

3. 결어

위에서 언급한 두 건의 최근 사례와 앞에서 언급한 인터넷규제 장치의 입법 목적을 보면, 인터넷 자율규제는 단순히 인터넷사업자의 도덕적 의무나 선한 의지의 결과라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지키려는 정책수단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율규제 논의가 ISP 등 인터넷 사업자의 윤리적 답책(answerability) 차원의 문제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자율규제의 주체가 법적 책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규제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율규제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면책프로그램 등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미국에서 인터넷 규제논의가 불법성이 비교적 명확한 프라이버시나 보안문제에 모아져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3자에 의한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가름하는 문제는 ISP가 민간 사업자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으로서

미국에서는 법원의 몫이다. 인터넷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 목적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Bloomberg News(2009.6.19). Internet companies have improved privacy protection, Yahoo exec tells Congress.

Cannon, Robert(1996). The Legislative History of Senator Exon' s Communications Decency Act: Regulating Barbarians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49. FED.Comm.L.J. pp.51-52.)

Clickz(2009. 19.6). FTC Revises Guidelines Affecting Online Word-of-Mouth. http://www.clickz.com/3635221

FTC(2009.2).??Federal Trade Commission?Staff Report: 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Online Behavioral?Advertising: Tracking, Targeting, and Technology. www.ftc.gov/opa/2009/02/behavad.shtm

FTC(2009.2). 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http://www2.ftc.gov/os/2009/02/P085400behavadreport.pdf

Google Public Policy Blog(2009. 10.15). Coming to an online ad near you: more "Ads By Google" labels. http://googlepublicpolicy.blogspot.com/

Information Week(2009.09.23). FTC Revises Guidelines For Online Ads. http://www.informationweek.com/news/internet/policy/showArticle.jhtml?articleID=214200208.

Norby-Jahner, KrisAnn(2009). "Minor" Online Sexual Harassment and the CDA 230 Deffense: New Directions for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Liability. Hamline Law Review. Vol.32. 207-263.

Szoka, Berin & Adam Thierer(2009) COPPA 2.0: The New Battle over Privacy, Age Verification, Online Safety & Free Speech. Progress on Point. 16(11). pp.1-34.

Wall Street Journal(2009. 2.13). FTC Backs Web-Ad Self-Regulation. http://online.wsj.com/article/SB123448268250279765.html

관련법률

H.B. No. 2003. www.legis.state.tx.us/tlodocs/81R/billtext/pdf/HB02003F.pdf.

www.kis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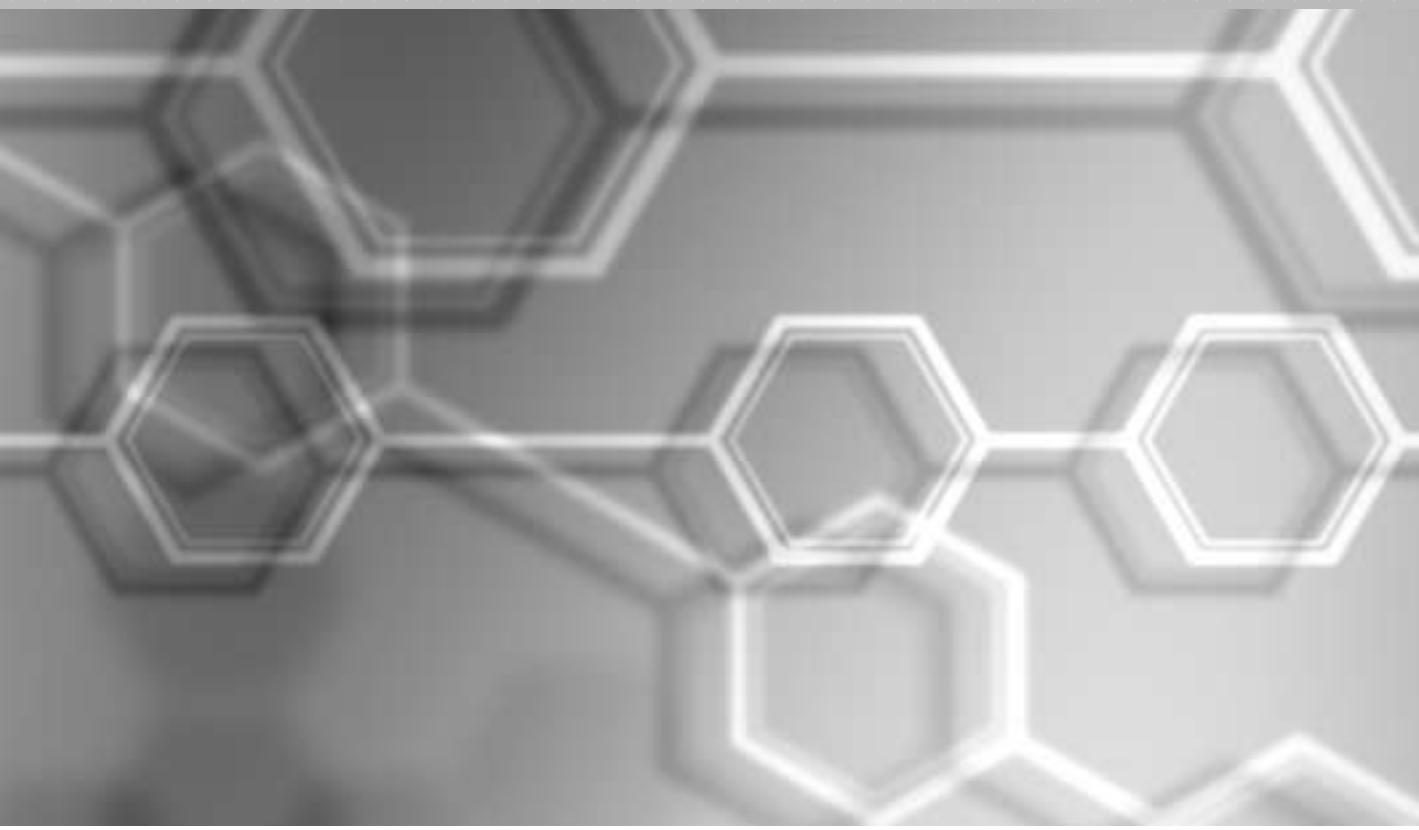

KISO 기구 정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관
-.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강령
-. 이용자 가이드라인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약칭 KISO)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기구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제3조(소재지)

본 기구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해외 또는 지방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기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구 강령 및 가이드라인 수립
2.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물 처리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제 자율규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4. 기타 기구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 기구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사
2. 일반 회원사

② 본 기구의 회원은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기구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이사사는 인터넷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 이사 및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2. 일반 회원사는 인터넷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 기구의 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비)

① 회비는 기본회비, 특별회비로 하되 기본회비는 연1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구는 회원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사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기구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일반 회원사는 이사회가 정한 기본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회원은 본 정관과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① 본 기구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 받지 못한다.

③ 회원이 본 기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2조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으며, 기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 기구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의장 : 이사 가운데 총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겸한다.
2. 이사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감사(1인) : 이사회 의장의 추천으로 총희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회 의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구의 재산, 회계 및 업무감사
2.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 · 사임 · 전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 · 사임 · 전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중 의장 권한대행자를 선임한다.

④ 의장 권한대행자는 3개월 이내에 신임 의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해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의장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의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잔여임기를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신임 임원의 선출)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 의장과 감사는 임기만료 전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기구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
   2. 임원간의분쟁 · 회계부정 또는현저한부당행위
   3. 본 기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② 임원의 해임 결의는 이사사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

총회는 본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6조(구성)

① 총회는 회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회원사의 표결권은 1사1표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회원사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사가 이 정관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에 한 번 소집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제20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기구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본 기구는 총회를 대신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제2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사의 대표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에 의해 부여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1사1표로 한다.

제24조(위임)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사는 해당 이사사에서 대리인을 선정, 이사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이사사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위원의 위촉 및 정책위원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정책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구 강령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사무처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정관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해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정책위원회

제29조(구성 및 권한)

①본 기구의 정책위원회는 각 이사사별 1인의 위원과 회원사 소속이 아닌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사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의결권을 가지며 일반 회원사는 정책위원회에 의결권 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기구 강령 및 정책결정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안 마련
2. 위원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정책 결정
3. 합리적인 게시물 정책 수립을 위한 기타 사업

제31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회원사 소속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정책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상근한다.

②위원장의 퇴임 · 사임 · 전직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정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3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후임자가 위촉된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7장 사무처

제34조(설치)

본 기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5조(조직)

①사무처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책위원장이 구성한다.

②정책위원장은 사무처를 관리 · 감독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장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원 및 회계

제36조(운영재원)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분담금, 후원금, 출연금,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8조(예산과 결산)

본 법인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결산서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9장 보칙

제39조(세칙의 제정)

본 규약으로 정한 것 이외에 본 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사항이나 이사사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칙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해산)

본 기구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제41조(비밀엄수 의무)

본 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2009. 4. 14.)

(시행일)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KISO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하 '기구' 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른 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라 함은 회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및 집단을 말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회원사 서비스를 통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개인 및 집단도 포함한다.
2. '게시물' 이라 함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정책 결정' 이라 함은 정책위원회가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취급 방안에 대해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회의)

① 본 위원회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② 위원장은 정책 결정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대리인을 선정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대리인 참석 또는 서면 의결권 위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이 온라인 회의에서 위원장이 사전에 공지한 시한 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은 위원장에게 위임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뒤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부위원장 1인을 들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정책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과 관련하여 게시물 정책을 결정한다.

1. 이용자가 기구에 신고한 사안으로서 사무처가 기구의 판단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위원들에게 검토 요청한 사안들 가운데 위원이 상정한 건
2. 이용자의 신고 없이 위원이 상정한 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의 요청으로 총 3회에 한해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1.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잔존하여 신속한 결정이 어려울 경우

③ 정책 결정의 내용은 위원 전원의 동의를 통해 의결된다.

제7조(정책 결정 내용의 공개)

① 위원회는 정책 결정의 내용을 신고한 자에게 알린다.

② 위원회의 정책 결정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당자사가 정책결정 결과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2. 불법 정보나 권리침해 내용의 공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제8조(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본 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부칙

부칙(2009. 3. 3)

이 운영규정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4)

이 운영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1)

이 운영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강령

한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온 인터넷 사업자들은 한국 인터넷 환경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우리는 건강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겨냥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게시물 관리에 있어 공동의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2009년 3월 발족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인터넷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아나가고자 다음과 같은 강령 아래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상호 소통하고 협력한다.

제1조 표현의 자유 옹호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보장한다.

제2조 이용자 책임 제고

우리는 이용자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제3조 이용자 보호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을 모두 이용자로 보고 이용자의 권리와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4조 공익의 수호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불법 정보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공익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인권과 공적 이익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제5조 독립적 운영

우리는 이해관계, 부당한 외압 등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운영하며, 정부기관의 조치 및 협조 요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검토한다.

제6조 공정한 운영

우리는 특정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입장으로 편향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불편부당하고 일관된 기

준을 지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운영한다.

제7조 사회적 책무 기반

우리는 법적 책임을 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수행 시스템 구성에 기여한다.

제8조 소통과 협력 지향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공조의 정신으로 협의해 나간다.

2009년 3월 3일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엔에이치엔
케이티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

KISO

이용자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인터넷 공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 역시 지켜야 할 법질서가 있고 상호 존중이 필요한 사회적인 공간입니다.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면서 블로그, 뉴스 댓글, 미니홈피, 까페 등에서의 악성 댓글이나 저작권 침해 게시물, 개인정보 유포 등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는 누구나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그리고 신뢰받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용자의 주의와 관심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ㅇ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신용카드번호, 전화번호, 사이트 접속계정 등을 공개한 게시물은 인터넷 사업자의 게시물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유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Q. 스스로 실명과 사진, 이메일 등을 공개한 게시물도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게시물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여권번호, 사이트 접속계정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했더라도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인터넷 사업자의 게시물 정책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ㅇ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 · 사진 · 이미지 파일 등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Q. 나의 저작물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떠돌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저작권법 상의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해서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출처만 표기하면 뉴스를 퍼가는 건 상관없지 않나요?

"신문 기사 자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문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 표시는 물론, 허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다만 부고, 기관 동정 및 사건사고 단신 등의 단순사실 보도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명예훼손이란?

법률상 명예훼손이란 일부러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불특정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의 신분 · 성격 · 혈통 · 용모 · 지식 · 능력 · 직업 · 건강 · 품성 · 덕행 · 명성 등에 대한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도록 만드는 행위는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일부러 공개적인 장소에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아지게 만드는 내용을 게시한다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모두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사업자가 판단해 줘야 하나요?

"인터넷 사업자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각 인터넷 사업자에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음란 정보란?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 예술적 · 사상적 · 과학적 · 의학적 · 교육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음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음란 정보로 분류되나요?

"보통 남녀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경우,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등이 음란 정보로 분류됩니다. 아동 ·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Q. 성인들끼리만 보는 건 괜찮지 않나요?

"음란물은 성인에게 허용된 표현물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성인에게도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표현물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기관의 성인등급의 심의를 받은 출판, 방송, 영상물의 경우는 성인에게는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ㅇ 기타 불법 정보란?

인터넷에도 오프라인에서 해당되는 법률이 대부분 적용됩니다.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바이러스나 해킹툴 유포, 국가기밀이나 기업기밀 유포,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불법 도박 알선, 성매매 유인 알선 등을 포함하는 정보는 불법 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게시물의 URL을 명시하여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각 사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삭제 및 이용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ㅇ 불건전 정보란?

인터넷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용자에게 혐오감, 불쾌감,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욕설과 잔혹물 등의 불건전 게시물은 각 인터넷 사이트의 원칙에 따라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일정한 원칙 아래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욕설의 처리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각 사의 운영정책과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물을 빗대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표현, 신체 손상 및 경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 즉 '씹', '개', '미친', '잡', '씨' 등의 접두사로 표현된 정보가 욕설 사유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Q. 아직 어린 자녀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좀 불안한데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회원사들은 아동·청소년에게도 깨끗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자녀가 불건전 정보에 접근할 것이 우려될 경우 각 사이트가 무료 혹은 일부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권유합니다."

[참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회원사의 이용약관 및 신고센터

각 회원사의 이용약관 등에는 회원의 의무와 게시물 처리 원칙이 나와 있으며, 각 사의 신고센터에는 불법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법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원칙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사는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ㅇ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 : www.daum.net

다음 서비스약관

http://www.daum.net/doc/info.html?t__nil_footer=menu4

Clean Daum 운영원칙

http://cs.daum.net/redbell/policy_article.html

다음 고객센터(신고센터)

http://cs.daum.net/redbell/top.html

ㅇ 야후! 코리아

야후 : kr.yahoo.com

야후! 서비스약관

http://kr.docs.yahoo.com/info/utos.html

야후! 고객센터(신고센터)
http://help.yahoo.com/l/kr/yahoo/abuse/

ㅇ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 www.nate.com
싸이월드 : www.cyworld.com
네이트닷컴 서비스이용약관
http://www.nate.com/footer/legal/index_080926.html
네이트 사이버고객센터(불법이용자 신고안내)
http://helpdesk.nate.com/faq/report2.asp
싸이월드 이용약관
http://www.cyworld.com/cymain/v8/info/agreement.asp
싸이월드 헬프데스크
http://helpdesk.cyworld.com/main.asp

ㅇ 엔에이치엔

네이버 : www.naver.com
네이버 이용약관
http://www.naver.com/rules/service.html
네이버 블로그 운영원칙
http://blog.naver.com/post/blog_useinfo.htm
네이버 고객센터(신고센터)
http://help.naver.com/query/main.jsp

ㅇ 케이티하이텔

파란 : www.paran.com
파란 이용약관
http://user.paran.com/policy/service/service.html
파란 아이디스크 클린정책
http://idisk.paran.com/default.aspx?wbs=1.4.2.2
파란 고객센터(신고센터)
http://help.paran.com/faq/report/Main.jsp

ㅇ 프리챌

프리챌 :www.freechal.com
프리챌 이용약관
http://login.freechal.com/TermsOfService/default.asp?LogSection=FCM000%5FFNET01%5F007
프리챌 고객센터(신고센터)
http://help.freechal.com/HdHelpReport.asp

ㅇ 하나로드림

하나포스닷컴:
http://www.hanafos.com
하나포스 이용약관
http://help.hanafos.com/agreement/agreement_service.asp
하나포스 온라인도우미(신고센터)
http://help.hanafos.com/singo/singo_libel.asp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135-846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5-24 모아코 빌딩 8층
T 02 563 4955 F 02 563 4929